

## 새로운 민족관계를 정립하자

趙 政 男  
<고대교수·한국민족연구원장>

우리는 지금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족적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연변을 중심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이 고국 동포들에게 당한 어처구니 없는 피해 소식이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에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짓에 속여 온 재산을 탕진한 사람, 한국 유학이라는 미끼에 피해를 본 사람, 사기 결혼 핏에 걸려들어 농락 당한 여성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동포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당하는 피해는 심각하다.

이곳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당하는 여러 형태의 사기 피해, 교묘한 편법으로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일,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인간 이하의 멸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또한 심각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남행(南行) 물결이다. 북한 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사결단의 남행은 단순히 탈북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 재통합과 분단체제의 와해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최근 벌어지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 즉 '재외한인'(在外韓人)들의 문제와 또 한국에서 우리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즉 '재한 외국인'(在韓外國人)들의 문제, 여기에 북한동포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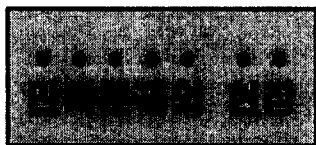
남한으로의 탈출 즉 '민족재통합'문제 그 모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현안이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썩 낯선 문제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갈등은 비단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탈냉전적인 상황변화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바로 종족 내지는 민족적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대는 과거 이데올로기적인 긴장이 민족적 긴장으로 옮겨간 듯한 민족과 민족주의가 나타내는 새로운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구 소련 권에서 나타내고 있는 계속되는 민족갈등,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족자각의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일본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한 이민족 집단과의 교류의 증대에 따른 다민족 공존체제의 원활한 형성과 이의 효과적인 유지가 그 어느 현안에 못지 않은 초조와 긴장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널리 일반화되고 있는 민족관계 변화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다.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서 생활하는 '재외자국민'들의 증대가 그 하나고, 외국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다 민족적 상황의 형성이 또 하나다. 현대 민족문제가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인구 즉 '재외한인'은 약 5백만 명으로, 이들은 중국에 190여만 명, 미국 150여만 명, 일본 70여만, 구 소련지역 50여만 명 등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어 그곳 현지 다른 민족집단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 유입되어 우리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이른바 '재한 외국인'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노동자들로 이 중에는 합법적인 취업자가 약 8만 여명, 불법취업자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불법 취업자들의 대부분은 중국 조선족 동포와 지정업체에서 이탈한 산업연수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내외적인 민족적 상황에서 볼 때 우리 또한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의 고유한 평온 속에 낮잠을 잘 시기는 지났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아닌 다른 민족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여러 민족집단들과의 공존의 공간을 어떻게 효과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보다 지속적인 발전여부가 연계되어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민족관계 형성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된다. 효과적인 민족관계의 설정이 부재한 상태가 만들어 낸 갈등이 바로 최근에 우후죽순 격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저 엄청난 갈등이며, 또 그것이 이 땅으로 돈벌이 온 외국인들에 대한 갖가지 불협화음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명확한 새로운 민족질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한민족공동체의 틀 안으로 굳건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도 이들과의 공존적인 삶을 마찰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내야 한다. 세계는 개별 민족들의 민족적 독자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서로 다른 민족집단의 공존적 삶의 형태가 점점 보편적인 내용으로 자리잡아 가는 이중적인 민족질서를 확대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질서의 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서 우리는 이제 보다 현실적인 민족질서 재구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민족적 특성 유지와 다민족 공존성의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소명일 수밖에 없다.



## 러시아 편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에서의 민족 갈등은 이미 페레스트로이카가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1년 말 소연방의 해체와 새로운 독립국가 연합(CIS)의 결성을 계기로 기존의 민족분류가 해결된 지역도 있었지만, 체첸-러시아 전쟁처럼 신생 독립국가내에서의 새로운 갈등이 본격화되거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당국간의 분쟁처럼 기존의 해묵은 민족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구소련 지역에서 민족분쟁이 가장 고질적인 지역을 든다면 코카서스와 러시아의 체첸공화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민족갈등은 자치·독립을 요구하는 아프카지아 지역의 문제를 둘러싼 그루지야 당국과 아프카지아 공화국간의 분쟁, 마찬가지로 독립을 요구하는 남 오세티아 당국과 그루지야, 러시아 간의 대립, 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독립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중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당국간의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해(1998년) 러시아와 체첸간의 대립을 위시하여 코카서스 지역내의 민족갈등의 양상을 개괄해 본다.

### ◆ 코카서스 지역

코카서스 지역내에는 10여 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민족갈등 지역이 몇 군데 존재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CIS내의 화약고와도 같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의 민족갈등은 아프카지아와 남 오세티아의 문제처럼 한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간에 자치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와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처럼 다른 국가에 속한 자민족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코카서스인들은 용맹스럽고 호전적인 기질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며, 소비에트 시절에도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려는 민족적 저항을 꾸준히 벌여 왔었다. 특히 1974년 그루지야에서 공용어를 그루지아어로 삼으려는 대중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애착은 남달라 결코 다른 민족에의 문화적 예속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다. 현재 코카서스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민족분쟁은 그루지아내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아프카지아 자치 공화국과 그루지야 당국간의 대립과 러시아내의 북오세티아 자치 공화국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남오세티아 자치 공화국과 그루지야 당국간의 대립, 그리고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해묵은 대립을 꼽을 수 있다.

### ● 아프카지아

1998년 한 해를 돌아 볼 때, 코카서스(Caucasus) 지역에서 가열되었던 갈등 해결

을 위한 정치적 노력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더구나 그루지아(Georgia)의 아브카지아(Abkhazia) 지역에서는 특히 심각한 폭력사태가 재연되었다.

연초에 그루지야 대통령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는 대국민연설을 통해 아브카지야 갈등의 “보스니아식” 해결을 제안했었다. 그 같은 해결책에는 1992-1993년의 전쟁기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루지야인들의 귀환과 정주(定住)를 보장하기 위해 NATO군을 투입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러한 방책을 승인하는데 실패했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보스니아식 해결을 단호하게 거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아브카지아의 남쪽 Gali 지역에서의 공공연한 테러활동이 1998년 초에도 계속 이어졌다.

5월 말, Gali지역 내 아브카즈 내무부 부대에 대한 그루지야 게릴라들의 공격은 그 지역에 주둔했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전에 제어하지 못했던 전면적인 적대감을 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결과, 1992-3년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Gali에 되돌아왔던 35,000의 그루지야인들이 다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수백명이 참사를 당했다.

몇차례의 UN이 중재하는 협상과 아브카즈 최고위층과 그루지야 대표간의 2차 회담에 이어, 셰바르드나제는 탈출한 사람들의 귀환과 무력사용의 포기에 대한 제2차 협정을 포함하는 공식 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아브카즈 지도자 블라디슬라브 아르드진바(Vladislav Ardzinba)와 만나겠다고 늦가을 무렵에 밝혔다. 하지만 회담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양 측은 이전에 합의한 조항들을

개정하려한다고 서로 비난을 일삼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남 오세티아

남 오세티아는 소연방 시절부터 그루지야의 연방탈퇴 움직임에 반대하여 러시아공화국내 북오세티아와의 통합을 요구해 왔다. 1989년에 그루지야 공화국의 남 오세티아 자치주는 러시아공화국내 북 오세티아 자치공화국과의 궁극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하면서, 자치공화국의 지위로 상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다. 일년 후에, 새로 선출된 민족주의적 성향의 그루지야 의회는 남 오세티아 지역의 자치적 지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루지야인들이 지배하는 비공식적이고 준군사적인 그룹들과 남 오세티아내의 오세티아인들간의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오세티아인들이 남 오세티아로부터 북 오세티아 자치공화국으로, 그리고 그루지야의 다른 지역에서 남 오세티아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1992년 이후로 그루지야 정부는 남 오세티아의 분리주의적 지도부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 오세티아지역에 대한 국가예산상의 배정도 전혀 없었다. 더구나 인근 북 오세티아의 경제도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남 오세티아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98년에도 남 오세티아(South Ossetia)에서의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한해가 마감되었다. 셰바르드나제와 남 오세티아 대통령 루드비그 치비로프(Lyudvig Chibirov)의 단독회담 뿐만 아니라,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아 대표단간의 일련의 대화도 상호

간의 미래관계의 바람직한 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치비로프는 아브카지아와 그루지아와의 동등한 지위와 이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부여되는 연방협정을 줄곧 주장했던 아르드진바와 대조적으로, 그루지야 연방국가 내에서의 자치를 수용했다.

한편 오세티아인들과 인근의 인구쉬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98년 1월 러시아 남 오세티아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드르 드자소코프(Aleksandr Dzasokhov)의 당선은 인구쉬(Ingush)인의 귀환을 둘러싼 인근 인구췌아(Ingushetia)와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1992년 말 남 오세티아에서의 인종청소시 도피했었다. 그러나 양 민족간의 폭력 행사는 계속되었다. 10월 말, 인구시의 대통령, 루슬란 아우췌프(Ruslan Aushev)는 모스크바 측의 오세티아인들에 대한 명백한 선호를 비난하고 나섰으며, 그리고 체치냐처럼, 그의 공화국도 러시아연방을 떠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했다.

###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1988년 2월부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내의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ch) 자치주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행정 관할로 바꾸어 줄 것을 소비에트 당국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는 아르메니아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반대로 아제르바이잔 내에서의 반 아르메니아 감정도 증폭시켜 민족간의 유혈폭력사태를 야기시켰다.

1991년 9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했던 3일간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의회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로 선언했다. 그 후 3개월 뒤, 당시 소련 체제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카라바흐의 대중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독립을 한결같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후, 인구 130,000명에 달하는 나로르노 카라바흐 공화국(NKR)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립 국가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대통령, 정부, 의회, 군대, 외부세계와의 수송망 등을 다 갖추고 있다. 그곳의 자동차들도 독자적인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고, 화폐는 독자통화가 아닌 아르메니아 드램(dram)화를 쓰고 있다. 이처럼 카라바흐가 그나마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1992년부터 군비를 갖추기 시작했고, 또한 아르메니아 당국과 타지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이 보내주는 경제적 원조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1993-4년 사이에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둘러싸인 카라바흐가 아르메니아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는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NKR에서 아르메니아로 연결되는 2차선 고속도로인 산악도로를 개선하는데 아르메니아 유민들의 경제적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전 서기이자 현 꼬라스노야 르스꼬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레베드가 지휘했던 카라바흐 군은 CIS내에서 최정예 부대로 성장하여 수차례의 거둬된 전쟁에서 전략이 약화된 아제르바이잔 군을 패퇴시켜 왔다.

이처럼 카라바흐인들이 강한 응집력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카라바흐 인구 구성이 인종적으로 단일하다는 데에서 들 수 있다. 비록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이지만 1980년대에 카라바흐 인구의 25% 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아제르바이잔인들은 1992년 중반에 이르러 거의 이주해 버렸다. 1994년 5월에 러시아는 아직 분쟁중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NKR 간에 평화협상을 중재하였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을 하고 카라바흐 지도부는 경제재건에 진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아르메니아와 NKR간의 협력 또한 증대되어 왔다.

근래에 아르메니아에서는 1997년 9월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민스크 그룹이 제안한 나고르노-카라바흐 평화를 위한 초안을 놓고 벌어진 아르메니아 지도부내의 심각한 균열이 98년 2월, 아르메니아 대통령 레본 테르-페트로시안(Levon Ter-Petrosian)의 사임을 몰고 왔다. 레본 테르-페트로시안은 2월 3일 결국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둘러싼 논란으로 통치능력에 한계를 느껴 사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의 계승자, 로베르트 코차리안(Robert Kocharian)은 평화회담의 조건없는 재개를 요구했으나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10월의 아르바이잔 대통령 재선거에 뒤이어,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인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Aliyev)는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계획은 아제르바이잔과 인준을 받지 못한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이 “커먼 스테이트(Common State)”를 이룰 것을 주창했다. 예레반(Yerevan)과 슈테파나케르트(Stepanakert) 당국, 양 측 모두는 몇가지 유보조건을 달면서도, 그 제안을 이후의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수용할 조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바쿠 당국은 그것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통합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지으면서, 최대

한 양보하더라도 ‘고도의 자치’만이 카라바흐에 제공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반복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카라바흐에서의 98년 한해 폭력사태는 카라바흐내의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군을 격리시키는 지점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에 국한되었다. 지난 몇해와 달리 카라바흐사태는 소강국면 속에서 문제가 내연되어 있는 셈이다.

### ◆ 체첸

러시아인과 체첸인간의 관계는 19세기에 전쟁을 치렀고, 소비에트 시대와 소연방 붕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립해왔을 뿐 아니라 적대시하는 측면마저 역력했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지역에서의 마피아 같은 체첸인들의 범죄 빈발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체첸인들은 러시아인들을 자신들의 독립을 억압하는 거대민족으로 여긴다. 소련 붕괴후 양자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94년 12월 체첸공화국 정부군이 러시아군 70여 명을 포로로 잡은 것을 계기로 양국간에 수년에 걸친 전쟁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었다. 97년 1월 초에야 철군을 완료한 러시아군의 체첸 주둔과 전쟁 수행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다 주었고 옐친의 지도력 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년여에 걸쳐 치러졌던 체첸전쟁에서 러시아는 압도적 병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거듭했다. 94년 12월 체첸 수도 그로즈니(Grozni)시 함락에 무려 한달이 걸렸으며, 1개 기갑연대가 매복에 걸려 전멸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려 나와야 했고, 이 전쟁은 러시아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

기가 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민간 인권단체인 '미모리얼'은 94년 12월부터 96년 8월 종전에 이르기까지 체첸전쟁에서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5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러시아 측의 공식입장으로 체첸 특사였던 알렉산드르 레베드 전 국가안보위 서기는 전체 사망자가 8만명내지 10만명 이며 이중 8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97년 5월 러시아-체첸 간에 새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양측간의 전쟁은 일단 진정되었으나 양측간의 가장 핵심적 현안인 체첸의 궁극적인 완전 독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또한 평화협정이후 체첸 내부 문제도 복잡해져서, 러시아라는 강적 앞에서 유지됐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평화조약 체결 이후 친러시아 행위자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씨족간의 갈등도 야기되었다.

결국 러시아에서 이탈을 선언한 체치냐(Chechnya) 공화국에서는 98년도에도 아슬란 마스카도프(Aslan Maskhadov) 대통령과 급진적인 야전군 사령관, 샤밀 바사예프(Shamil Basayev)와 살만 라두예프(Salman Raduyev)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두 사령관은 대통령을 모스크바와 계속 협상하려 했다고 하면서 이를 반역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은 단 두 차례 만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었다. 6월 말, 라두예프의 지지자들이 그로즈니(Grozny)에서 체첸 보안 장교 한명을 사살했다. 3주 후에 그로즈니 동쪽에서 정부군과 한 호전적인 이슬람 야전 사령관을 추종하는 부대간의 충돌이 있었다.

또한 전쟁당시부터 성행했던 체치냐에서

의 납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장 저명한 인질로는 러시아 대통령 특사 발렌틴 블라소프(Valentin Vlasov)를 들 수 있으며, 그는 러시아 관리가 그의 석방을 타결짓기까지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마스카도프를 계속해서 지지했다.

체첸과 비교적 성공적 협상을 이끌어 낸 두 명의 성공적인 러시아 총리, 세르게이 키리엔코(Sergei Kiriyenko)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가 8월과 10월에 체첸 대통령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모스크바가 전쟁으로 파괴된 체첸의 기간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고히 이행하리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11월 말에,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은 모스크바와 그로즈니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공식조약 체결 작업을 보류시켰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공식조약의 환상을 계속 쫓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마스카도프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해주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체첸문제의 경과를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체첸의 '아프카지아화'의 가능성을 점치게 만들고 있다.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요구, 전쟁을 치렀던 아프카지아는 그루지야와 평화협정을 맺고 일단 전쟁을 끝냈다. 그러나 독립문제는 유보된 상태로, 소규모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체첸은 스스로를 독립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체첸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어느 쪽도 이 입장에서 양보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민족간의 폭력 같



등의 잠재력은 상존한다. 러시아공화국 내의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주는 위협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특히 99년 봄 대통령선거를 통해 야당이 오랫동안 통치해온 블라지미르 쿠티예프(Vladimir Khubiev)를 추방하기로 결정한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아(Karachaevo-Cherkessia) 공화국에서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체첸과 다게스탄의 회교분자들과의 연합에서 보듯이 한 지역에서의 분쟁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오늘날 구소련지역에서의 민족분쟁 양상임을 잘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서 98년 여름 금융위기가 대두하고 대통령 엘친의 몰락이 예견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각 지역에서의 사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제 사회는 지역적 불안정이 아제르바이잔의 그루지아를 통한 카스피해의 원유 수출을 위태롭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며 카라바흐와 아브카즈에서의 갈등해결에 조급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중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 우 경 관 >

## 유고연방 편

세기말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 중 하나인 민족간 갈등은 인종적 반목과 종교적 갈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신유고연방내 코소보(kosovo)주에서의 유혈충돌이다. 98년

들어 불거지기 시작한 코소보 사태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 숨지고 27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코소보 사태는 98년 초 신유고연방의 세르비아 경찰이 코소보 독립을 주장하는 알바니아계 게릴라와의 교전에서 일부 주민을 학살하고 주민들이 경찰을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게 됐다.

### ◆ 코소보 분쟁의 유래와 역사

발칸 반도의 화약고 ‘코소보 분쟁’의 발단은 기원전 7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칸은 원래 알바니아계의 조상 일리리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인의 조상 슬라브인이 이곳을 정복했던 것이다. 12세기 경 슬라브인들의 발칸반도 진출 이후 부족국가에 머물러 있던 남슬라브족중 한 종족인 세르비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 결국 왕조를 세우고 14세기초에는 스테판 두산이라는 탁월한 왕이 출현, 왕조의 절정기에 이르렀다. 당시 세르비아는 지금의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등을 포함,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해 “대세르비아”의 꿈을 이루었다. 이때 알바니아인들은 남쪽으로 밀려나 생존에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1389년 오스만 터키제국이 세르비아를 점령하고 다시 알바니아인들을 코소보지역 주위에 이주시키면서 알바니아인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금 코소보지역 자치주에는 2백만명의 주민중 알바니아계가 약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1830년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겨우 자치를 회복했던 세르비아는 2차대전 후 티토에 의해 유고슬라비아에 강제편입됐다. 그후 코소보 지역은 74년 세르비아공화국에 편입된 자치주로 남게됐으며 알바니아계는 이에

반대해 반세르비아 시위를 계속했다. 상당수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불안한 코소보를 떠났고, 반면에 알바니아계의 이주가 이어져 80년대말까지 주민구성의 90%를 알바니아계가 차지하게 되었다. 74년 요세프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집권 당시 개정된 연방헌법에 따라 코소보의 알바니아계는 자치권을 얻기도 했다.

### ◆ 최근의 분쟁상황

1984년 티토가 사망하고 이후에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90년 유고연방이 해체되자 민족갈등이 표면화됐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도 이때부터 독립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89년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 Nholosevich) 신유고연방 대통령은 알바니아계로부터 자치권은 물론 언어마저 빼앗았다. 이 때부터 코소보에서는 분리독립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96년에는 코소보해방군(KLA)으로 알려진 무장단체까지 등장, 유혈충돌이 계속돼 왔다. 결국 잠복기를 거친 코소보 위기는 97년부터 표면화된 알바니아해방군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 98년 2월말부터 세르비아군이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래 세르비아에게 코소보는 타민족의 자치따위를 인정할 수 없는 성지라는 인식이 뿌리깊었다. 게다가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지가 코소보에 모여든 알바니아계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이같은 측면에서 코소보 사태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와 회교를 믿는 알바니아계간의 오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다.

코소보인들(Kosovars)은 온건파 이브라

힘 루고바(Ibrahim Rugova)가 주도하는 지하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밀로세비치는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데, 그리고 이후에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를 희생하면서까지 대(大)세르비아를 건설하는데 더 관심을 더 기울였다. 그러나 9년 후에 대세르비아 건설을 위한 밀로세비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크라지나(Krajina)와 보스니아(Bosnia)로부터 유입된 수십만의 세르비아인들이 헐벗은 난민으로 되었다. 그러나 1998년 2월에 그는 코소보 해방군을 전멸시키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밀로세비치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 군이 강화시켰던 동일한 책략을 코소보에서 사용했다. 군부와 비정규군이 지원하는 그의 유사군대적인 경찰이 주도하면서, 코소보 마을에 대한 포격, 방화와 약탈이 감행되었다. 세르비아인들과 코소보 해방군 중의 몬테니그로인(Montenegrin)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약 250,000 명이 코소보에서 살해되거나 알바니아, 몬테니그로, 혹은 그 밖의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휴머니즘적인 관심은 NATO의 위협을 포함하여, 벨그라드(Belgrade)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증대시켰다. 유럽 각국과 미국은 6월 신유고연방에 경제제재를 추가했고 NATO군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효과는 얻지 못했다. 10월 말에는 미국의 특사 리처드 홀부르크(Richard Holbrooke)가 전투를 중지하고 정치적 타결을 위한 여지를 유도하는 협상을 중재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99년 가을까지 선거를 실시키로 하는 등 밀로세비치 측이 국

제사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위기 국면은 일단 진정됐다.

곧 이어, 세르비아군 철수여부를 감시할 국제감시단 선발대 2천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OSCE로부터 위임을 받아 코소보에 도착했다. 이웃한 마케도니아에서는, NATO 긴급대응군이 이끄는 약 1,700명의 군대가 민간 모니터 요원들이 위협에 빠질 경우 그들을 구하기 위한 대기의 정렬을 갖추었다. 그러나 12월 말 세르비아군이 나토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탱크와 병력을 동원, 코소보자치주내 알바니아계 반군 거점을 공격함으로써 코소보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타격을 가했다. 이 사태는 미국과 나토의 비난을 사게되었고,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 유고연방내 코소보사태가 최근 (99. 1. 16) 남부 라차크 마을에서 발생한 45명 가량의 알바니아계 주민 집단학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국제사회 무력개입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르비아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살해 용의자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코소보해방군(KLA)복장을 한 테러리스트 수십명을 살해했다고 확인했다. 반면 KLA가 운영하는 코소보통신은 세르비아 경찰과 보안군 등이 51명의 주민을 집단학살했으며 이중 KLA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유엔안보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앞서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고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에게 무력개입 등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고는 윌리엄 워커 OSCE 코소보주 휴전감시단장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 유고에서 철수토록 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이후 3개월만에 발칸반도

는 다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코소보 문제는, 세르비아인과 코소보인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해결의 어려움이 연유한다. 세르비아인들은 실제로 코소보를 거의 방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중세 세르비아 문명의 요람으로 그 곳을 인식하면서 정서적 일치감을 부여하고 있다.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반대하거나 혹은 다수 민족인 알바니아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 부여조차도 반대한다. 홀부르크가 동의한데 이어, 밀로세비치 정부는 광역이 아닌 지방 수준에서 자치를 부여하고, 민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 그룹들에 동등한 정치적 대표의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세르비아인들이 입법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코소보에 확고히 전달되어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세르비아 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루고바에 충성하는 온건한 코소보인들과 코소보 해방군을 지지하는 강경파들에게는 명백히 수용되기 어려운 안이다. 루고바를 비롯한 온건 노선의 코소보인들은 다수지배의 원칙에 기초한 광역의 자결권을 주장해왔다. 최소한도로 그들은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의 뒤를 이어 유고슬라비아 연방내에서 제3의 공화국 지위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도 2년에서 3년 뒤에 있게 될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때까지의 한시적인 해결책으로서만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표명해왔다. 반면 코소보해방군은 완전독립만이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2천명을 약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KLA는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주민뿐 아니라 해외거주 알바니아인

들을 상대로 본격적 무장독립투쟁을 위한 지원병·전비 모금에 나서고 있다.

1998년 말, 코소보 문제의 주요 중재자인 미국은 밀로세비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제임스 루빈(James Rubin)은 12월 초에 밀로세비치가 “문제”(the problem)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당국은 점차 코소보에서의 문제 해결은 밀로세비치와의 새로운 협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의 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 유고 연방내에서 세르비아의 파트너인 몬테니그로의 대통령인 듀카노비치(Milo Djukanovic)도 공감하고 있다. 그는 98년 5월 말 반 밀로세비치 기치를 내걸고 몬테니그로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밀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과 서유럽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몇몇 미국 관리들과 논평자들은 세르비아의 유린당한 미디어를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육성함으로써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독립 마인드를 지닌 몬테니그로의 지도자인 듀카노비치에게 이루어져야 민주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국제적인, 혹은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 세르비아가 자신들의 중대되는 고립과 빈곤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밀로세비치가 최근에 자신의 주요 참모들과 군사령관들을 경질시켰다는데 주목한다. 관찰자들은 그같은 경질이 밀로세비치가 점차 신경질적으로 되면서 무엇을 할지를 확신하

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관찰자들은 밀로세비치와 거리를 두고 경쟁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밀로세비치 이외에 확실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관찰자들 중에서 일부는 밀로세비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대는 최근에 밀로세비치가 억지로 군 수뇌의 요직을 맡긴, Momcilo Perisic 장군 같은, 군부 인사나 지배엘리트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이 밀로세비치보다 더 민주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또한 현실이다.

여기에 NATO 등 국제사회가 코소보사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마땅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코소보 지역내의 알바니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간의 민족간의 분쟁은 좀처럼 쉽게 해결이 날 것 같지 않다. 코소보 분쟁사태가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무엇보다 이 지역의 분쟁의 역사와 유산이 뿌리가 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어떠한 타협도 기대하기 힘들만큼 이 지역의 세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은 깊이 파여져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코소보사태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군사개입을 적극 지지한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 중

국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돼 군사행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NATO등 국제기구의 무력개입이 가져올 적지 않은 파장을 생각할 때 군사적 해결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셋째로, 코소보주 독립 움직임에 대한 유고내 강경분위기가 더욱 결속력을 얻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관련, 밀로세비치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부크 드라스코비치 세르비아 혁신운동 지도자가 곧 정개개편을 통해 밀로세비치 정권의 부총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신유고 대통령의 코소보 정책은 결정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속에서 코소보를 병합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크다.

< 우정걸 · 김래영 >

## 중 국 편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소수민족은 인구의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이 접경지역이고 비교적 자원이 풍부해 중국 당국으로서는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소수민족 자치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내에서 분리독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수민족은 티벳민족과 위구르민족이다. 이들 민족은 역사적으로 분리독립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련방의 해체와 주변국의 지원은 90년대 들어와 저항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 지역에서 중국 당국의 강력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고 각 소수민족

의 국가 수립 능력의 부재로 독립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라도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sup>1)</sup>이 추진되면서 조선족과 같이 모국을 가진 소수민족의 왕래가 계속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 ◆ 신강 위구르 지역

최근 몇 년사이 이지역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회교분리자에 의한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강에서는 1980년대에 산발적인 排漢 운동이 일어났지만 소련방의 붕괴후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은밀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분리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위구르 민족은 한족보다 월등한 인구상의 열세를 가지고 있으며 저항운동의 양상이 지극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당국의 대응도 강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4월경 3건의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위구르족이 믿는 이슬람의 종교의 식인 코르반제가 열린 기간에 남부 위구르족 밀집지역인 아스크시에서 폭탄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1997년에는 항의 시위중 한족을 테러하기도 했으며 댐을 폭파하기도

1) 중국지도부는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혁개방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방 이기주의와 분리독립운동을 막기위해 중앙의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199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정책노선을 결정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 2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장쩌민 총서기는 소수민족지역 자치체도의 기본노선을 향후 100년간 지속할 것으로 언급해 소수민족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하는 등 근래들어 가장 격렬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 14일에는 터키의 앙카라에서 민족대회를 열고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 ◆ 티벳 지역

1950년 인민해방군의 침공으로 중국에 강제 합병된 이후 티벳 민족문제는 중국중앙정부에 변화가 발생할때마다 생기는 심각한 정치불안 요인이다. 달라이라마와 그 지지자들이 인도로 망명해 독립정부를 세우는 등 인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벌여왔다.

중국당국은 17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면서 저항운동을 억압하고 있다. 기존 강제 합병과 종교탄압이 저항운동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근래들어 중국당국에 의해 자행된 티벳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sup>2)</sup>에 대한 것이 저항운동의 원인으로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들어 분리독립세력의 중국당국과의 공존과 대화방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8년 7월 인도 다라살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는 달라이라마의 북경방문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4일 달라이라마는 미국 방문시 완전 독립은 포기할 것이며 중국정부

에 대해 자치를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 ◆ 조선족 지역

중국당국은 조선족에 대해 그동안 분리독립 운동이 없었던 점과 사회주의 우방인 북한과의 교류 등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자치 확보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에 의해 조선족이 한국과 교류가 잦아지면서 중국당국은 민족문제를 야기시키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8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 예고된 뒤 중국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한국이 비록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중국공민인 조선족에게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외동포특례법은 조선족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고 모국이 존재하는 다른 소수민족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 법안이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한국인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민족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중국당국의 견제로 조선족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다. 그러나 98년들어 조선족의 지명도 높은 인사를 중앙인사로 발탁하는 조치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98년 3월 중국인민해방군 상장 출신인 조선족 조남기 장군이 제9기 전국인

2) 티벳의 생태적 파괴는 구소련이 비러시아 지역에서 자행했던 환경파괴처럼 또 다른 민족적 저항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중국의 삼림정책의 결과 티벳 총면적의 1/6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면적이 황폐화되었다. 또한 티벳을 핵폐기물 저장소로 사용해왔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주변지역에서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정협 부주석은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전국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부총리 등과 함께 국가영도자 그룹의 일원으로 꼽히는 것이다. 또한 98년 3월 조선족 이덕수씨가 중국 국무원의 장관 29명중 하나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으로 발탁되었다.

### ◆ 중국의 유대인

중국의 유대인들은 당국 집계로 약 1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 뿌리 내리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유대인들은 신분증에 유대인임을 표시하고 소수민족으로 인정해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하는 등 숫자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 김 용 찬 >

## 동남아시아 편

1998년은 다사다난한 해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아시아 각국에서 엄청난 정도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 발생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동남아

시아 국가들의 중산층들은 형성의 역사가 짧아서 의외로 취약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계층이 되었다. 경제적 위기를 맞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판이기도 했던 중산층의 붕괴는 곧이어 정치적 안정의 붕괴로도 이어졌고, 이러한 불안은 또 이들지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억누르고 있던 민족적인 갈등들을 분출시키는 구성이 되어 동남아 각지는 전에 없던 민족갈등의 현상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이중에서도 가장 큰 격변을 겪은 나라였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의 30년 철권통치가 가져왔던 절대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하르토는 정권수호를 위해 강력한 군부의 육성과 지지확보에 주력하면서 이를 유지시켜줄 돈줄로서 화인(華人)들을 활용했다. 화인들은 이미 수세대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었고 이들은 네덜란드 식민당국과 공생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기득권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수하르토는 정치적 보호를 약속하면서 이들의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네시아 최대기업인 살림그룹의 회장이자 97년도 아시아갑부 18위의 소에도노 살림(임소량, 81)살림이다. 이와 같이 정권에 유착하여 독점적이고 특권적 위치를 가지게 된 화인들은 점차 경제적 부를 집중시키게 되어 이번 사태에 이르기 직전에 인도네시아 경제력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3%인 6백만 명 정도에 불과한 화인들의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인종 폭동이 있었

지만, 수하르토 정권과 유착한 부유한 화인들은 그러한 고비를 공권력의 그늘 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들의 부패와 부의 독점이 극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이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번의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에서 보여 주듯이 30여만 명에 달하는 화인들은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급거 도피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인종폭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대규모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많은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의 분노를 사서 더욱 과열된 인종적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많은 중국계 여성들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등 많은 인권유린 사건들이 나타나는 등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은 수하르토의 뒤를 이은 하비비 정권에서도 선불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화인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려 한다면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들의 경제력 집중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위험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민족적 갈등의 치유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관대한 분위기와는 달리 기독교·카톨릭과 이슬람간에 종교적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계가 많이 믿는 카톨릭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불법적으로 강

점한 동 티모르 문제가 철권통치자의 퇴장으로 인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다. 많은 동 티모르인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쟁점화된 동 티모르의 독립을 이번 기회에 기정사실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군부의 단호한 입장과 함께 독립허용이 정치생명의 끝이 될 수 있는 하비비 대통령의 취약한 입지로 인해서 쉽지 않은 현실이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의 권위주의적 통치 속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화인들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의 차별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을 고수해왔다. 원래 한시적인 입법으로 제도화되었던 부미푸트라 정책은 현재 그 기한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지고 있다. 화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원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정책이지만 지속적인 화인차별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화인들은 전통적으로 야당 지향적인 성격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성격은 이들의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숫자가 인도네시아내의 화인수와 비슷하지만 전체인구 비율에서는 무려 1/4이나 차지한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즉, 이들의 비율이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굳이 정권에 유착하거나 하지 않고 대립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의 정치적 기득권에 대해서 이들은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는 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말레이시아를 강하게 밀려들면서 마하티르의 정치적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부총리와 민주화세력들에 대해 강



경입장을 취하게 만들었지만, 이들의 민족주의적 요구는 화인들을 불안하게 하여 이들이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마하티르의 편에 서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싱가포르 전 수상 이광요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재통합에 대한 의견이나 그의 자서전으로 인해서 생긴 양국간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의 재발이기도 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우려가 깊게 배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특히 최근에 양국간의 무역과 금융에서의 경쟁적 입장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싱가포르가 수행하던 무역과 금융의 중심거점 역할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분담하고자 하는 데 대한 싱가포르의 반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역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일부였다는 의식과 함께 양측의 민족적 갈등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아세안이라는 통합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공생하고 있지만, 이들의 민족적 경쟁심리는 이미 싱가포르의 독립이래 지속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98년 동안 양국간에 생겼던 갈등은 아세안 내에서 주도적 역할에 대한 경쟁과 함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적 갈등의 재연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묵은 민족적 갈등인 미얀마의 분리주의자들은 그동안의 소탕결과 상당히 미약해졌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미약한 종족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파급력은 미약하고, 미얀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문제보다는 민주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박 지 원 >

## 유대인편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는 '유대인의 보통국가 건설'이라는 이상 아래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한다. 1998년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건국 50돌을 맞는 해였다. 유대인에게 오늘의 이스라엘은 나치가 자행한 '홀로코스트(대학살)'의 잿더미에서 부활한 불사조로 상징된다.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아랍권에 둘러싸인 사막에 '다윗의 별'을 국기로 꽂은 이래 반세기동안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국가로 일구어 냈다. 특히, 건국 직후의 독립전쟁을 비롯해 56년, 67년, 73년의 '對 아랍 전쟁' 승리는 2000년 유랑의 고통을 겪어낸 유대인의 조국에 대한 집착을 유감없이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놀라움은 이스라엘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진가는 이스라엘 '밖'에 있으며, 특히 유대인의 신변과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발휘하는 유대인의 조직력과 위력은 대단하다.

현대 세계의 유일한 초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유대인은 그들 스스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자평할 만큼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3%(약 5백 8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엘리트 층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인물만 보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유대인이고, 재계의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 문화계의 스티븐 스펠

버그 감독, 언론계의 뉴욕 타임즈 발행인 아서 슈츠버그, 타임위너의 제럴드 레빈 회장 역시 유대인이다. 또한 최근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세계 경제 구원의 삼총사'로 선정한 하버드대 J. 삭스 교수, 메사추세츠 공대 P. 크루그먼 교수, 세계은행의 J. 스티글리츠 부총재 모두 유대인이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유대인은 1백대 기업 소유주의 1/3가량, 상원의원의 10%, 백만장자의 20%, 아이비리그 대학교수의 60% 등 사회의 주요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진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정계의 로비활동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요구를 반대하거나 反 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의 정치인들은 모두 정치 생활을 단념해야 할 정도이다. 역대의 트루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존슨 행정부가 친 이스라엘 성향으로 유대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에 반해, 카터와 부시는 反 이스라엘 정책을 취했다는 이유로 대선에서 유대인들의 응징을 받은 희생자로 간주된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30억불(미국 대외 원조 자금의 20%)이라는 원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바, 이는 유대인들의 로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국 유대인 사회의 친 이스라엘 정치로비는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Pro-Israel PAC(Pro-Israel Political Action Committee), JINSA(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UJA(United Jewish Appeal; 자금 조달 조직)과 같은 몇 개의 조직에 의해서 주도된다. 미국 유대인들이 로비력을 동원했던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 정부는 나찌 전범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소련의 유대인 해외 이민 허용을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시리아와 이디오피아에서 고대 유대인 커뮤니티의 해외 이주를 가능케 했다. 또한 1997년에는 세계 시온 기구(World Zionism Organization; WZO)와 Jewish Agency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대전 학살 유대인 재산 찾기 운동'이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관련국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것들만 보더라도 소수의 유대인이 거대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집중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유대인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소문'을 무작정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약 1.2%(1백 70만 명)에 불과한 이들 유대인들이 정·재·문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 총리,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야블로코당 당수, 야콥 우린손 경제장관, 보리스 넴초프와 아나톨리 추바이스 전 제 1 부총리 모두 유대인이며, 실세 금융 재벌의 70%가 유대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러시아 주요 분야로의 유대인 진출은 反 유대주의를 자극하기도 한다. 실제로 98년 12월 10일, 공산당 소속의 알베르트 마가쇼프 의원이 러시아의 경제 파탄은 유대인들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러시아의 시오니즘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는 '현재 러시아 정부 내의 실세는 모두 유대인들이며 러시아 민족 출신은 그들의 운전사들 뿐'이라고 비꼴 뒤, 유대

인의 정·재계 진출을 막기 위해 (인구)비례 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지난 12월 스위스 연방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유대계 정치인인 루트 도레프스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상징적 의미가 강한 스위스 대통령직은 7명의 각료가 1년씩 윤번제로 맡게되며 외교활동에서 스위스를 대표하는데, 서유럽 국가 중 유대인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인정한 스위스에서 유대계 여성 정치인의 선출은 더욱 의미가 큰 것이었다.

유대인의 영향력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80년대에 이스라엘은 한국 정부의 아랍 보이콧 동참을 위해 노력한 바 있는데, 미국 유대인 조직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이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보내면서 압력을 가했는데, 91년 11월에는 미국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서명한 서한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93년 이츠하크 라빈 전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체결한 오슬로 자치협정을 통해 무르익던 평화 정착 무드가, 96년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 집권 이후 뒷걸음 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미국은 소련의 남진 저지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해 왔으나, 각국이 자국의 실리에 주력하고 있는 오늘날의 외교 전략 추세를 고려할 때 양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석유자원을 매개로 한 아랍 산유국의 반 이스라엘 로비력이 유대인 로비력을 압도하는 상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반 유대주의의 기운 역시 유대인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에서의 시오니즘 논쟁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97-98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해서 '陰謀의 배후'로 유대인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일 내에서도 상당수 지식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참회'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전해진다. 일례로, 독일의 문호 마르틴 발서는 '이 시대의 다른 목적을 위해 과거 나치정권의 잘못이 계속 이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과거 잘못을 영속화 하는 일이며 새로운 세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여 유대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反 유대주의 현상이 아직까지는 '위협적'으로 평가되지 상황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디아스포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구축했던 미국 유대인 커뮤니티는, 이교도와의 혼인율 증가와 시나고그(교회당) 참석율의 감소로 인해 정체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또한 위기를 맞을수록 단결하던 유대인의 '안보' 응집력은 개인의 선택권이 중시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즉, 정체성의 혼란과 응집력의 약화에 대한 대책이 유대인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이들만큼 격심한 민족적 고난을 겪은 민족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민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세계 각국

의 각계 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초기 정착 과정과 유대인 커뮤니티 성장 발자취는 재외 한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고 병 국>

## 쿠르드

기원전 8세기경 고대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메디아족에까지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2천 8백여만명의 쿠르드족. 이들이 거주하는 쿠르디스탄(‘쿠르드 족의 땅’이라는 뜻)은 결코 존재한적도 없고, 아무런 공식적 국경도 없는 상상의 나라’이다. 쿠르드 족은 현재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舊 소련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쿠르드 왕조 하에서 公國의 형태로 半자치를 누렸으며, 이들 공국중 일부는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존속하기도 했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 민족은 아랍인도 터키인도 그리고 이란인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이들은 하나의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족의 땅에 대한 이들의 동경은 위협과 차별, 그리고 살육의 오랜 수난사에 있어서 이들 민족문제의 원천이 되어왔다. 쿠르드 족의 자결과 자치의 요구는 오스만 제국의 붕괴와 터키의 1차 대전 패배에 이어 1920년의 세브르 조약에 의해 독립국가 창설을 인정받았으나, 런던과 파리로부터 받았던 약속들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고, 세브르 조약은 1923년 로

### 쿠르드 族의 인구분포

(1997년 기준, 추정치)

국 가	전체인구	쿠르드 족	쿠르드 족의 비율
터 키	65,000,000	14,300,000	22%
이 란	65,000,000	6,500,000	10%
이라크	19,300,000	4,400,000	23%
시리아	13,400,000	1,100,000	8%
구소련		500,000	
기 타		1,700,000	
전 체		28,500,000	

잔에서 재협상 되었지만, 오히려, 협상과정에서 이 약속은 잊혀져 버렸고,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쿠르드 족의 투쟁은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고통과 슬픔, 비애와 비극으로 점철된 민족은 역사의 큰 물결속에서 무수히 목도될 수 있고, 지난 역사를 조금만 들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포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만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쿠르디스탄 내지는 쿠르드 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들 민족에 대한 非문명적 박해는 20세기 후반의 고도 문명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음에 더욱 충격적이다.

바그다드는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일종의 인종 청소를 개시하여, 총과 군용기 그리고 불도저를 이용하여 쿠르드족 마을을 조직적으로 황폐화시켰다. 과거 88년에는 이란군과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 쿠르드 족의 마을이 이라크측의 독가스 공격을 받아 5천여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지난 91년의 걸프 전쟁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설치된 “(북부)비행금지 구역”은

사실상 ‘미니 쿠르디스탄’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쉽게도 양대 적대 파벌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쿠르드 족을 후세인 정권의 와해 공작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던 북부 이라크내의 두 개의 민족조직인, 쿠르드 애국동맹(Patriotic Union Kurdistan. PUK)과 쿠르드 민족당(Kurdistan Democratic Party. KDP)의 지도자인 탈라바니(Jalal Talabani)와 바자니(Massoud Barzani) 간 평화 회담이 지난 1월 8일에 있었다. 북부 이라크 투르크 민족 집단간 갈등의 핵은 터키 정부와 쿠르드 민족당간의 불법적 디젤 거래를 통한 수익과 관련된 재정적 문제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작년 9월 17일에 워싱턴 합의가 있었으나, 이제 양 당사자간에 다시 한번 더 수익의 공유, 터키내의 쿠르드 반군에 대한 피난처 제공의 거부를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작년(98년) 9월 17일의 워싱턴 합의(Washington Agreement)의 성실한 수행과 이를 위한 장벽제거 등의 6개항에 합의하고 1월 9일 회담을 종결하였다. 또한 이 회담을 통해서 합의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회담 개최의 용의를 명백히 하였다. 이에 대해, 1월 11일 미국무부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쿠르드 애국 동맹은 가시적인 조치로서 애국동맹 통제하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터키의 쿠르드 노동당(PKK) 조직이 활동할 공간을 제공치 않고, 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도 불가함을 선언하였다. 1월 14일 미국무부의 근동 담당 차관보인 엘리자베스 존스(Elizabeth Jones)와 터키 외무부의 중동 국장 셀리코(Orguz Celilco)를 필두로 하는 양국 대표는 KDP지도부와 회담, 쿠르드 민족

조직간의 합의를 치하하고 워싱턴 합의의 실현방안을 집중토의 하였으나, 이들 양 조직의 장래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한편, 터키내의 쿠르드 족들은 압둘라 오칼란이 1978년 쿠르드 노동당(PKK)을 창건한 뒤, 그가 쿠르드 국가 건설을 위한 무력 투쟁을 지휘해 왔다. 그가 본격적인 게릴라전을 벌인 1984년 이후, 14년간 터키군과 쿠르드 노동당간의 총돌로 사망한 사람은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수 년, 수 차례에 걸쳐,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례(93년 3월의 Tilkilir 등)도 있다. 또한, 지난 96년 1월 11일에 ‘유러피안’ 紙에 의해 공개된 사진(쿠르드 게릴라의 시체가 머리와 시체가 절단된 채, 터키군이 절단된 머리를 높이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음)은 수많은 사람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들에 묻혀있던 쿠르드 족 문제가 전세계에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작년 11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로마로 들어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는 오칼란이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이는 당시의 전철레 대통령인 피노체트의 문제와 시기상 중첩되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오칼란을 넘겨달라는 터키와 그를 넘겨줄 수 없다는 이탈리아, 또 이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려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줄다리기가 벌어진 끝에 27일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마시모 달레마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오칼란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오칼란 처리는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아니라, 쥘유럽의 문제”라고 강조함으로써, 그 동안 등한시해 온 쿠르드 족 문제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월

5일 이탈리아 총리가 오칼란을 자국에서의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15일의 영국의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오칼란은 로마를 떠나, 모스크바로 피신하였다. 1월 18일에 공개된 이탈리아 총리에 보내는 서신에서 오칼란은 쿠르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중동 평화의 관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이탈리아 출국은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니 일마즈(Kani Yilmaz. PKK의 유럽 대변인)는 19일 회견에서 터키 내에서의 군사적 공격을 강화할 것과 앙카라, 이스탄불 등의 주요도시가 목표물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달의 쿠르드 노동당의 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 이는 터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코자 시도하는 오칼란의 계획과는 전혀 상이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散在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열망은 독립적인 민족 국가의 건설이나, 그러한 목표가 용이하지는 아닐 듯하다. 왜냐하면, 이미 터키 내에 거주하는 쿠르드 족과 이라크 거주 쿠르드 족은 단절을 길을 걷고 있고, 쿠르드 노동당 내에서의 내분이 존재하는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쿠르드 민족들간의 지역적 단절과 터키내의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주변 아랍국들과 터키, 미국의 이익에 강력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국가로 자부하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쿠르드 노동당의 비판이 부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국제 협상을 통한 쿠르드 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오칼란과 PKK를 단순히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판단력 불구상태에 빠질 수는 없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소수 민족의 자결과 이에 기반한 독립국가 건설의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러한 원칙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원칙의 확립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오 창 육 >

## 화 교

1998년 한해는 화교(華僑)들에게 있어서 수난의 해였을 것이다. 화교들이 부의 독식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대인처럼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었지만, 98년처럼 큰 피해를 입은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화교나 화인(華人)들은 낙지생근(落地生根)의 법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잘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국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폐쇄성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화교들은 전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들이 없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또한 거주국에서 상당히 높은 경제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국의 중국인들과는 달리 상당한 폐쇄성을 보인다. 중국인 자체가 개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화교나 화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폐

쇄적인 방(幫)을 형성하여 부를 독점하면서 고립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것이 많은 현지인들과 갈등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들이 사실상 지역경제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들의 폐쇄적 부의 독점은 많은 원주민들의 낮은 경제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결과시켰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60년대의 많은 인종폭동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부미푸트라정책이라는 反화교정책을 가져왔고, 인도네시아에서도 反화교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그런데 한가지 특기할 만한 일은 어떤 反화교정책을 펴든지 간에 화인들은 그 거주 국가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이들의 특별한 민족성에도 기인하지만, 식민지 시대부터 가졌던 경제적 특권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작금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족갈등은 기본적으로 화교와 화인등에 의한 부의 독점과 함께 스타르트 독재정권에 이들이 부여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98년 6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 소수집단이 정당을 결성했다. 포니잔리아우 '인도네시아 중국인 개혁당' 설립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하비비 대통령이 약속한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동남아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함께 反중국계의 분위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화교자

본을 이탈하게 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反화교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동남아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2조달러에 달하는 화교자본의 성격이 점차 금융자본화되면서 강력한 국제시장의 자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같은 경우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자본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제주도에도 12억불 정도의 홍콩자본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도 있다. 그리고 인천시 선린동의 차이나타운의 복원에 화교자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상당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화교라는 민족적 일체성에도 상당히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차이나타운의 복원은 마치 한국에 대한 자본투자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인다. 화교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팔라롬푸르에서는 '자란 로케 유'거리 근처의 대규모 공동묘지 이전·개발문제를 둘러싸고 화교 등과 강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몇 주전 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프리베나 건설회사에 팔라롬푸르 시내의 대표적 국유지인 공동묘지의 이전·개발권을 부여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불교, 가톨릭 등 모든 종교계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화인들은 자신들의 부모세대가 묻혀있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998년에는 이광요 전싱가포르총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같은 구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화교세력들 내부에도 많은 경쟁적 파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라는 당장은 융화하기 힘든 큰 정치세력의 양분이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중화경제권' 구상의 구체화에는 장애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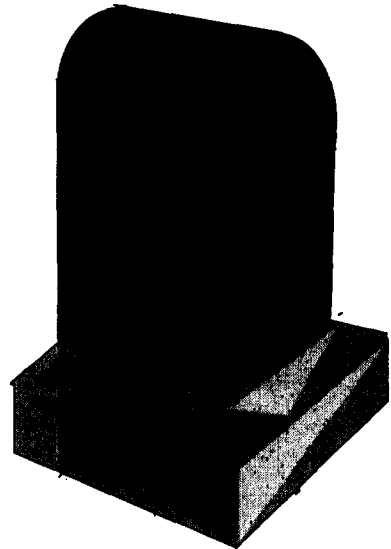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의 경제블록이 사실상 화교경제권의 네트워크로도 작용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이들의 행보는 자신들이 보다 전면에 나서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건설해왔던 화교들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본격적으로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화교세계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화교들의 영향력은 사실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강하다. 미국에서는 때아닌 '교과서 지원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1998년부터 중국은 그동안 대만이 독주해온 미국내 화교에 대한 교육지원을 공언하고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내 화교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대만도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주국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대만은 재미 화교들에게 중국어 교과서를 무료지원하고 교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친대만 인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토와 대만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이들을 활용해 미정부가 대만편을 들도록 압력을 가했다. 화교들의 힘에 주목한 중국은 뒤늦게 대만으로

비에 길들여진 미정가 분위기를 친중성향으로 바꾸기 위해 교과서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여하튼 중국계의 많은 해외이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아래 묶이는 단순한 중국인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나름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고리로서 중화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 고리가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족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살 수도 있음을 98년의 화교들이 잘 보여줬다고 하겠다.

< 박 지 원 >





## 연구논단

## 북한의 민족정책

김 용 찬  
<고려대·석사과정>

## 1. 서론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민족이라는 언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족관과 민족주의, 민족정책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실행에 옮겨왔다. 민족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할 사항은 북한사회가 언명과 담화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천명된 입장과 견해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다. 공식문헌에 천착한 분석은 북한사회의 내적 동학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관 및 민족정책을 공식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해석하고 이중적 의미<sup>1)</sup>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실들에 주목하지 못하면서 문헌에만 충실한 것은 현실과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경직되고 협소한 영역에만 연구가 머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북한 민족정책 연구는 궁극적으로 공식문헌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중성을 파악하고 실증자료에 기초한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민족관 및 민족주의, 민족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다. 첫째 연구자들이 민족을 nation에 국한해 이해함으로써 북한내의 ethnic group 문제와 해외동포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있어서는 연구의 부재를 나타냈다. 즉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 재외교민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족개념과 해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주로 70년대 말에 이루어졌고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는 이른바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천명에 영향을 받아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자료의 부재로 대부분 공식적인 발표와 입장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1) 이중성은 북한문헌의 이중구조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문헌은 공식적으로 간행된 문헌과 내부용 문헌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헌의 분리 구조는 북한의 공식 담화를 이해하는데 암시하고 있는 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두가지의 공식문헌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석, 「북한문헌의 담화구조」 pp.27-34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되었다. 즉 공식적인 발표가 가지고 있는 맥락적 의미와 이중성 등을 분석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상인의 「북한 민족주의 연구」(민족통일연구원)는 북한 사회주의의 전개과정과 민족주의의 변용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어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박호성의 「북한민족주의의 특성」은 지나치게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주의 개념과 비교에 치우치는 면이 있지만 북한 민족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재진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은 주체사상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민족정책에 관한 연구는 일면적인 시각과 특정한 영역에만 집중되어왔다. 우선 민족정책 연구를 협소하게 북한의 남북통일 정책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의 연구도 일본지역에만 국한되거나 80년대 들어서는 그나마 부재한 상태이다. 유삼열은 학위논문 「북한의 재일교포정책과 조총련」에서 조총련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일본의 정책의 영향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민족정책을 3대혁명역량강화 정책의 일환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민족정책의 변화와 이중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광의 논문 「남북한의 재외교민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면적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냉전구도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시각은 70년대 각종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정책 변화를 북한의 민족관 변화를 고려하면서 시기 구분을 하고 구체적 정책의 원칙과 사실을 서술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족개념, 민족주의, 민족정책의 본질적인 연구를 극복하고 통일된 내적 연관성을 갖는 연구내용으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실들을 몇 개의 범주와 시기로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통일에 국한된 민족정책의 영역을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까지 확장시켜보고자 했다.

## 2. 민족정책의 의미

민족정책이라고 한다면 단지 일국 내의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의 관계에 국한된 정책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nation에 국한된 시각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실제 정책에서는 ethnicity의 중요성을 표명하였고 70년대 들어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나타나게 된다. 즉 해외동포에 대한 조항과 국적법에 나타난 것처럼 해외동포를 북한 공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족개념에서 혈연과 언어의 강조로 더욱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즉 북한의 민족정책은 ethnicity를 중요한 위치에 놓으면서 해외동포에 대한 범위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

로 확장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개념의 변화는 남한에 대한 통일정책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물론 북한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남한에 대한 혁명통일과 대외선전에 해외 동포들을 이용한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민족정책을 논할 때의 의미는 남한에 대한 통일정책과 해외동포정책, 그리고 북한내의 ethnic group에 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민족정책을-실제에 있어 민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냉전구도하의 대결구도 속에서만 북한의 민족정책을 파악한 결과이다-적화통일 실현의 일환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선전과 대남 비방 및 적화통일의 의지를 민족정책에 반영해왔고 해외 친북단체를 양성했던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것들이 민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민족정책이 정권 수립 초기의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버리고 50년대 중반부터 형성, 실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면적인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이 미주와 일본에 많은 부분 집중되었던 것을 본다면 북한이 3대혁명역량강화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음은 사실이라 하겠다.

### 3. 민족정책의 시기별 구분

#### 1) 민족정책의 형성기:북한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기

##### (1)북한민족주의의 형성

정권수립초기 북한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기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의 척결과 한반도 통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형식의 완성을 추구했다.

당시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쉽게 결합했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단절을 통해 반제국주의 노선을 취하고 자주적 발전노선을 정립함으로써,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sup>2)</sup>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반제반봉건사회혁명의 추진과 강화된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주체세력임을 자임했다. 그는 남한을 단순히 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놓

2) 북한의 민족주의는 중국이나 베트남등과 함께 제3세계내 저항적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세력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즉 해방전까지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과 해방이후 남한의 정권수립을 후견하던 미국을 비판하면서 반제국주의적 배타성을 내면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4) pp.54-60 참조

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족통일의 문제 역시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에 창설된 민주기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48년에 “조선민족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고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해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 초에 김일성이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조할 무렵 북한의 대남 전쟁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조선민족의 통일된 자주독립 국가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겠다는 김일성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전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강력한 지원에 의존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 (2) 재일동포 정책

북한의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 시기는 재외동포정책의 실질적인 부재기이다. 이시기 북한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재일동포에 대한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한일간에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궁지에 몰린 좌익계 재일동포들이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북한정권의 입장표명은 한동안 늦추어지고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해방 직후의 김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6년 12월 13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라는 서한에서 처음 재일 조선인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고 아직 조선이 재일동포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완전히 독립되면 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보호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일본의 진실한 민주주의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공산당의 지도하에 재일조선인 운동이 일본혁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당시 재일동포의 귀국 열망에 둔감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소수민족운동이 거주국 혁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시 사회주의권의 관행을 거부할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주도의 통일정부수립이 시급한 과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관심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 기인<sup>3)</sup>하는 것이다. 첫째로 북한은 재일동포문제가 2차대전 이후 자유·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소수민족문제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었으므로 일본공산당의 지원하에 국적의 자유선택과 일본 참정권의 획득으로 귀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시 북한의 주된 관심은 내부의

3) 유삼열, 『북한의 재일교포정책과 조총련』 p.62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공산화 개혁과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있었으며, 이러한 과업이 완수되면 재일동포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는 당시 좌익계 동포들의 남로당 지지성향에 비추어 볼 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남로당계와의 권력투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9년 '조련'과 '민청'이 해산되었을 당시에 김일성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스탈린주의에 따라 국제공산주의 입장에서 좌익계 단체에게 일본공산당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뒤이어 한국전쟁의 발발은 민족정책의 부재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3) 남북통일정책의 형성

이시기 북한의 민족정책은 남북 통일에 집중되어졌고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했으며 민족정책의 핵심은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는 민족해방이 관건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의 북한은 냉전고착기의 국제환경,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정비 및 군사력의 대남 절대우위 확보 등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강화 상황 가운데 무력통일을 준비, 시도하였다.<sup>4)</sup> 첫째, 북한은 통일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쏘미 량국군대의 진주'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점차 '미군의 남한 강점'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자주성을 특히 강조하게 되고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해방전쟁으로 한국전쟁을 명명하는 전술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노선에 기반한 통일전략으로서 민족통일전선사업과 무력통일 전략을 선택하였다. 김일성은 통일전선사업을 먼저 북한에서 잘 추진하는 것을 통해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이후 남북한 전체에 걸쳐서도 통일전선사업을 잘 결성, 강화하게 되면 통일된 민주주의 완전 자주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같은 자세에서 북한은 1946년 7월 22일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통일 결정체인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상설협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8년 4월 북한은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1949년 6월 25일과 28일 북한은 남북한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정식 결성하였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하기 위해 위장평화와 전복의 이중전략을 추진하였다. 즉 무력통일을 위장하기 위하여 전쟁도발 직전에 위장평화 공세와 더불어 환상적인 통일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4) 허문영, 「북한의 통일정책」 pp.133-137 참조,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의외교정책」 (서울프레스 1995)

## 2) 민족정책의 기반 구축기: 50년대 중반-60년대(사회주의 건설기)

## (1) 공식적인 민족관

북한에서는 60년대까지 스탈린이 제시한 민족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왔다. 즉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에 의하여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의 토대위에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공식적 표현은 사전류-조선말 사전, 대중정치 용어사전-등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에 주체사상을 사회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민족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의 시도를 하게 된다.

민족정책에 있어 본격적으로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무력통일에서 연방제 방안을 제시하며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제기했다. 해외동포에 대한 규정과 범위확대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3년 공포된 국적법에서 ‘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공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해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남북정권 수립이전의 국적을 소유했던 자 모두에게 공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북한이 해외동포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해외동포 정책

ㄱ) 재소한인 정책-이중국적자에 대한 처리 문제<sup>5)</sup>

소련과의 북한출신 재소한인에 대한 논의와 법규의 제정은 당시 북한의 재소동포정책이 형성기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조국으로서의 소련의 위치를 인정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대응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소한인의 국적문제와 북한국적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처리하고 북한국적 취득자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한다.

북한출신 재소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45년 소련군정 실시 이후부터 소련으로 건너간

5) 1957년에 「조·소 이중국적자에 관한 협약」으로 소련에 의해 북한 정권창출을 위해 파견되었던 간부 요원들은 소련국적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약의 배경은 김일성이 소련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정치적인 것이었다. 노영돈, 「CIS 한인의 국적」 p.135 재외한인연구 7호 (재외한인학회 1998), 노영돈 「북한출신 재소한인」 참조 교포정책자료 43집 1993

소련은 북한에 소련식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재소한인으로 구성된 고문관 제2진을 평양에 보냈다. 수차례에 걸쳐 평양에 도착한 고문관은 1949년 1월 4백28명에 이르렀고 총수는 허가이었다. 당 간부로는 남일, 허가이, 박참식, 김열, 김의환, 김재옥등이 있었고 군간부로는 김웅, 한일무 등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반종파 투쟁과정에서 숙청당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반종파 투쟁의 일환으로 북한은 이중국적자에 관한 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자로서 중국적으로 북한국적을 이탈하여 소련국적자가 된 자와 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무국적인 자 및 그들의 자손을 말한다. 이들은 몇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노동계약에 의한 파견노동자, 당초의 소련국적자, 유형인, 유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계약에 의한 파견노동자인 북한출신 재소한인은 북한으로의 귀환을 포기 또는 기피하고 중국적으로 소련공민이 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소련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배척하지 않았고 55년 김일성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듯 이들에게 소련국적의 취득을 허용하는 정령을 냄으로써 소련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애초부터 소련국적자가 존재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면서부터 북한지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소위 간부정책의 일환으로 파견한 자들의 일부이다. 이들은 애당초 소련이 파견할 때의 목적에 의하여 비교적 고위직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45년 이전에 소련에 정착하여 소련국적법에 의하여 이미 소련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 의해서도 이들의 북한국적이 인정되는 이중국적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57년에 양측간에 빚어진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서의 이들의 이중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선 이중국적자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소련국적을 선택하여 중국적으로 재소한인이 된 자들이다.

이 협약은 외형상 양측에 공히 이중국적자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여 동일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상은 재북한 소련국적자들이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58년 2월 5일부터 1년내에 두 개의 국적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하고 기간내에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국, 즉 북한 및 소련국적자로 인정하기로 되어있다.

유학생의 경우는 북한에서 소련으로 유학을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련으로 망명하거나 일단 귀국후 다시 망명해 나간 자들인데 소련측에서는 이들의 망명을 받아주었다. 유학생과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사할린 한인중에서 북한국적을 선택하고 북한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이다. 제2차대전 종전시까지 일본령이었던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징용된 한인들과 그 2세들이 있었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소련이 남사할린을 점령, 편입하고 나서 한인들은 소련에 의해서 무국적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도부터 북한에서 파견된 선전요원들의 선전에 의하여 약70%의 한인들이 북한국적을 취득하였고 1960년 경부터 북한국적을 취득한 젊은 남녀 한인들을 주대상으로 북한유학을 권장하는 선전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유학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방학이나 학업 종료후에도 부모형제가 있는 사할린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이미 북한 국적자여서 북한의 조치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두만강을 건너 망명을 했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여 사할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63년 국

적법에서는 북한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조항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이후 북한은 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북한에 잔류하게 되었다.

#### ㄴ) 조총련의 결성과 지원<sup>6)</sup>

54년 제네바 회담 후 북한의 남일 외상은 54년 8월 30일 재일동포에 대한 지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재일동포의 좌익계 단체들에 대한 관할권을 직접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남일이 발표한 성명내용은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것”과 “북한이 재일동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재일동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북한이외의 어느 국가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재일조선인이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을 변경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일조선인의 국적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표명은 한국정부의 한국 국적 주장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한국정책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다. 51년 1월 9일 창립된 재일조선 통일민주전선과 50년 7월 창립된 조국방위위원회는 55년 5월 25일 재일조선인 총연합회로 통합되었다. 조총련은 조직강령 제1조에 “우리는 재일 전체동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정부 주위에 총집결 시킨다”라고 하여 재일동포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분명히 명시했다.

조총련은 재일조선인의 임의 단체의 형식을 갖지만 북한 노동당 및 정무원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출발했다. 북한은 재일조선인이 북한 국적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해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할당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조총련을 가입시켰다.

#### <교육에 대한 지원>

56년 북한은 “재일본 조선인에게도 공화국의 법규에 입각한 공민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조총련에 관계법규와 교과서를 보냈다. 당초 조총련계 각학교의 운영은 적자투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북한은 일본정부에 대해 재일조선인의 교육문제는 인도상의 문제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조총련 산하 학교들에 대한 원조를 요구하는 한편 재일조선인 자제를 위해 교육원조금을 보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일본정부를 설득시키고 교육원조비를 57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조총련 소속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을 적극 지원해왔다.

북한으로부터 교육지원자금이 들어오자 조총련의 교육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조총련은 교육원조비를 받을 때마다 조선회관에서 ‘감사모임’을 열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

6) 북한 총람, pp.513-515 참조 (북한연구소 1983), 유삼열, 위의 논문 pp.64-70 참조



침하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1963년부터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해왔다. 교육관계자에 국한되어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 <교포복송>

북한은 59년 8월 일본 적십자와 북한 적십자간에 체결된 캄캄타 협정에 따라 59년 12월 2,942명의 재일동포를 복송시킨 후 81년까지 지속해왔다. 복송자의 수는 62년을 고비로 격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송자의 격감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상태에다가 북한의 사회실상이 일본의 교포사회에 알려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의 재일동포 복송정책은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상황과 한일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무력통일을 기도한 한국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전후북구와 경제 건설에 주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집단주의적 노력경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북한은 경제 복구 작업과 관련하여 재일동포들의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일본의 재일동포정책<sup>8)</sup>과 묘하게 결합될 수 있었다.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재일동포들을 추방해 버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일관계는 한일회담이 중단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일본은 한국측이 더 이상 한일회담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의 중단을 각오하고 재일동포의 복송방침을 결정하여 버렸다. 또한 교포복송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전략적 특성과 재일동포혁명역량강화의 전략적 특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일동포 복송정책이 전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재일동포들을 동원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발단이 되었으나, 일본의 탄압 및 추방정책에 대한 재일동포의 귀국열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재일동포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 (3) 통일정책

통일정책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환경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기간 북한은 동서 평화공존과 중·소 갈등의 국제환경,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중공군의 단계적 철수완

7) 유삼열, 위의 논문, pp73-85 참조

8) 일본정부의 대 동포정책의 기저는 추방정책, 분리정책, 동화정책을 시대적으로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었다. 1959년 일본정부와 북한간에 야합으로 이루어진 교포복송은 일본정부의 추방정책의 산물이다. 그후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추방정책의 일변도에서 궤도를 수정, 분리정책을 원용했는데 그 시점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하여 민단체와 조총련계로 분리, 민족역량의 집결을 봉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규약 가입을 전후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동화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구홍, 해외정책자료 35집, p.62 해외교포연구소

료에 따른 군사적 불안감등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하여 평화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전쟁으로 와해된 체제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선건설·후통일'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의 남한의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자, 북한은 「남북연방제」와 같은 선전·선동용 통일방안도 제시하였다.<sup>9)</sup>

1960년대 전반기 북한은 중·소분쟁 격화 및 베트남 전쟁확대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의 국제환경, 남한에서의 학생혁명과 군부쿠데타에 따른 강력한 반공정권 등장, 북한의 성공적인 전후복구사업 수행과 4대군사노선 채택등 국제 및 남한 혁명역량의 약화, 북한 혁명역량의 강화 상황 가운데 남조선 혁명노선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국방, 경제 병진노선 추진의 결과 북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이르는 1960년대 후반기에 무력도발의 강경노선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시기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연방제와 3대혁명역량 강화라는 통일정책의 두가지 큰 방향이 형성되어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연방주의 통일방안<sup>10)</sup>을 제시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성공적 기초확립과 한국정부와의 체제경쟁에서의 우위확보라는 판단과 60년 한국내의 정치적 위기 발생은 북한 지도부에게 정치적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기념보고에서 남북연방제 안을 제시한다. 김일성은 “만일 그대로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까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 과도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내놓는 련방제 방안까지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남북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 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도록 할 것을 우리는 다시 제의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제안의 근본적인 내용은 두가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지만,

9) 허문영, 위의 논문, pp.137-138 참조

10) 임혁배,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 pp.62-63 참조, 「남북한 통일론」(인간사랑 1992), 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pp.58-61 참조(민족통일연구원 1993)

그것이 남한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후 연방제 방안에 반영되고 있는 정치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이시기 북한은 통일노선으로서 지역혁명노선인 남조선 혁명론을 제시하고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으로 발전시켰다. 지역혁명노선은 통일에 있어 남한 혁명역량에 의한 남조선 혁명을 강조했으며 민주기지강화에 따른 북한혁명역량 중심의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종전의 통일노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혁명노선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론은 기존의 민주기지노선과 결합하여 1960년대 중반에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으로 공식, 체계화되었다.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혁명역량 즉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을 잘 준비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때에 제시된 북한의 강화노선은 해외동포 정책과 남한에 대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형성에 근간이 된다. 북한은 「지역혁명노선」과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에 기초한 통일전략으로 ‘선 남조선혁명 후 합작통일’ 전략을 채택하였다.

### 3) 적극적인 민족정책 실행 시기

-민족개념의 혼용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시기:70년대-80년대 중반

#### (1) 공식적인 민족관의 이해

##### (가) 민족개념

73년에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정치사전」에서는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 개념규정과는 달리 혈통이라는 요소를 추가시켰고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어의 공통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정치사전」 p.423)<sup>11)</sup>

그후 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민족개념은 스탈린의 민족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 1980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민족문제의 해결이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 문제의 해결에 앞서야 하며 민족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제시한다. 당시 김중림은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민족의 지위는 혁명과 건설의 중심적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또한 스탈린의 민족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11) 「남북한의 민족이념」 pp.8-9 참조 (국토통일원 1978)

## (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사회주의 건설초기 김일성은 민족주의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김일성은 민족주의를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민족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60년대들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계급범주의 상대적 강조가 나타나게 되고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논리적으로 합성하게 되고 민족주의를 주체에 관한 이론의 하위개념으로 내면화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라는 레닌식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정치사전』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계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떠난 ‘전민족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자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 이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인 민족의 지위는 사회주의의 계급우위의 언명에 의해 하위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시기 북한의 민족관을 사전류와 김일성의 담화에 의한 공식적 발표에 국한되어 해석하는 것은 실제 정책과 북한의 공식담화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다.

북한 민족관은 단독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시에는 극히 부차적이거나 선동적인 구호로 제기되었으며 정책으로의 반영은 미약했고 따라서 민족개념의 수립은 기초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즉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민족주의를 전술적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합시키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전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물론 이시기에도 공식적인 민족개념은 스탈린의 민족 정의를 따르고 있고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의 산물로 인식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민족개념 정의와 민족정책의 원칙과 범주는 6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되게 된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지속적 주장과 민족개념의 혼용속에서도 민족정책의 적극적 추진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전 시기 북한의 민족정책의 내용과 지역이 질적인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70년대에 들어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공식 외교기관을 통한 외교행위는 물론 민간외교와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각종 친선협회, 연대성 위원회, 친선공보 센터, 김일성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왔다.

또한 이시기에 북한은 남북통일의 일주체로서 해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전과 조직화를 공세적으로 벌어나간다. 71년 8월 처음으로 해외동포를 ‘민족’이라는 의식적 집합의 한단위로 규정하였고, 70년대 중반이후 통일에 있어 일주체로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대민족회의(73년 6월)와 전민족대회 등에 참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76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모든 해외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81년 신년사에서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더욱 굳게 단결하고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날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하겠다” 함으로써 해외동포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고려연방제 방안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고려연방의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우선 북한과 해외동포간의 ‘예비회의’(80년 11월) 및 ‘민족통일 촉진대회’(81년 8월)소집 등을 제의하기도 했다.

## (2)사안별 정책<sup>12)</sup>

### (ㄱ)해외동포 초청 사업

70년대 말까지는 개별적 재북연고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3명의 동포를 초청하였으나 79년 이후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79. 4)를 계기로 재북연고 동포 ‘조국방문단’등 단체초청에 주력하여 17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81년에는 북미지역에서 ‘금강산 관광단’ 모집 등에 의해 36명의 동포를 초청하였으며 82년에 들어서도 30명의 해외동포를 방북 초청했다.

또한 초청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거주국 정부에 영향력 있는 교수, 학자, 과거 각계에서 유력한 동포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한편 1981년 말경부터는 최초로 북미지역 동포중심의 소위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하여 방북초청하는 등 재북 연고자 중심에서 일반 무연고 동포까지 대상범위를 확대시켰다.

12) 북한총람, pp.537-547 참조 (북한연구소 1983), 「남북한의 교민정책 비교」 참조 교포정책자료 51집 1995

## (L) 해외동포 담당부서의 강화

해외동포에 대한 담당은 노동당과 정무원에서 이원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의 지도적 역량을 노동당에 두고 당 대남사업 담당비서 직속기관으로 소위 통일전선부를 78년 1월에 설치했다. 이후 북한은 당 연락부와 통일전선부를 중심으로 해외동포의 조직 확산을 지도해왔다.

또한 노동당 산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중심기구로 설치, 해외동포사회의 통일전선의 형성에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해외동포에 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무원산하에 해외동포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을 두어 해외동포 방북 주선 및 친북활동 지원을 전개토록 해왔으며 해외주재 공관이나 무역상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유엔 북한 대표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해외공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선전물 배포와 함께 수시로 기념 행사, 문화행사,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C) 해외 선전 활동의 강화<sup>13)</sup>

이시기에는 해외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활동이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북한이 기존 무력에 의한 통일전략을 3대혁명역량의 강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각국에 주체사상을 선전·보급하면서 해외동포에 대한 조직·선전·포섭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북한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사회주의 일반국가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김일성 우상화를 통한 대내적 통합력의 증대를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대외 선전활동은 현지의 매스미디어 활용, 간행물의 제작 배포,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1969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말리에서 최초로 김일성 연구소조를 조직한 후 80년대 초반까지 83개국에 624개의 연구소조를 조직하였고 이조직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해왔다. 주체사상 연구소조가 가장 많이 조직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해외동포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일 뿐 아니라 조총련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 및 확산에 막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선전활동을 위한 연구소조 및 선전활동은 물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에 있어 해외동포에 대한 조직화 및 의식화 사업에 이용되어졌고 이시기에 가장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특히 일본처럼 조직적인 구심인 조총련이

13) 김영덕, 「김일성 주체사상 대외선전활동 연구」 pp.31-46 참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있는 경우는 더욱 활성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주지역처럼 해외동포는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직접적 조직화가 어려운 경우 여러 형태의 선전과 씨클 형태의 연구소조 및 연구소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해외동포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했다.

### (3)지역별 정책<sup>14)</sup>

#### (ㄱ)구미지역

북한은 70년대 들어서 친북인사를 초청하고 미국내 동포들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71, 72년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고병철이 이끄는 '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신문, 잡지, 전단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강화했으며 71년 1월에는 미조친선공보센터를 설치하고 '코리아 포커스'라는 선전용 잡지를 발간했으나 76년 발간이 중지되었다.

또한 1971년 6월에 버클리에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위원회', 72년 6월에는 '조국평화통일 재미축진회', 75년 1월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을 설치하여 동포들은 물론 대학교수, 한국연구자, 친북한 인사, 공산주의 동조학생, 무역상사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대미활동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북한은 73년 9월 뉴욕에 UN대표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한층 더 선전과 조직활동을 강화했다. 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미국하원의원들에게 재미동포와 미국인의 이름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대한원조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으며 친북한 교포인 김용종과 고병철 등을 통해 김일성의 5대강령이 평화통일의 필수요건이라고 선전했다. 특히 이시기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중에 약 40%가 북한 출신들이어서 북한은 이들에게 이른바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 (ㄴ)서독과 캐나다

현지동포들과 친북인사들로 혼성조직된 '서독-조선협회'가 72년에 설립되었고 '남북문제연구회'가 74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김일성노작연구소조'가 71년에 설립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친북한단체들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캐나다에서는 70년 11월에 '캐나다-조선친선문화협회'가 설립되고 70년 8월에 '조국통일위원회캐나다지부'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친북한 기관들은 해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등에 많은 선전물을 배포하는 작업을 해왔다. 캐나다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 각종 친북단체의 결성 및 신문창간등이 이루어졌다. 72년 국제태권도 연맹을 창설했고 73년 10월에는 뉴코리아 타임스 등을 창간하기도 했다.<sup>15)</sup>

14) 김영광, 「남북한의 재외교민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pp.44-65 참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5) 기원택,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한인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56집 1997

## (ㄷ)재일동포 정책16)

김일성은 1970년 교시에서 “일본에서의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투쟁과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함으로써 조국통일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조총련은 민족 단합사업을 벌어나간다. 하나는 민단과 공동집회를 개최해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다른 방법은 민단체 동포나 중립계 동포들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72년 6월 14일 재일조선인 축하단과의 담화에서 김일성은 “총련조직들은 핵심을 튼튼히 꾸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파분자나 반동분자의 책동에도 총련조직을 지킬 수 있으며 각계 각층의 모든 동포들을 총련의 두리에 굳게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총련의 조직강화 사업과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김일성과 북한 당국의 직접적 지도는 계속 진행된다. 그 이유는 한국 방문이 시작되면서 재일동포 사회가 동요하고 민단이 영주권신청촉진운동으로 그 입지가 강화된 것에 기인했다.

북한은 대남정책의 변화를 재일동포 정책에 반영해서 조총련을 통한 한국에서의 반정부 투쟁지원정책을 펼쳤다. 60년대말의 폭력적인 대남도발이 실패하게 되자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게 되고 해외 동포에 의한 지원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남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조총련의 활용성이 증시되었고, 이 시기부터 북한의 재일동포정책은 적극적으로 남한 혁명전략에 이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 (ㄹ)재소동포 정책17)

북한의 구소련 지역 재소동포에 대한 정책은 사회주의 우방으로서의 소련에 대한 예우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해 정부와 당의 형식적 관계에 주안점이 두어졌었다. 그리고 재소동포에 대한 북한의 무대응은 내부적 요인으로 재소동포중에서 북한에서 숙청당하거나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친선관계의 유지와 선전활동의 강화를 80년대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와 당의 형식적인 관계 이외에 구체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에 있는 조선친선협회 활동이다. 이것은 1983년 이후 전개된 것이다. 카자흐공화국 알마타에서는 1983년 9월 5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날로 선포하고 북한 대표의 설명과 영화상영, 사진전시회 등의 행사가 치루어졌다. 또한 우즈베크 공화국에서는 5년 후인 198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날 행사를 가졌다.

16) 유삼열, 위의 논문, pp107-130 참조

17) 이광규, 「재소한인」 pp.390-393 참조 (집문당 1993)



## (4) 통일정책

이시기에 북한은 60년대에 제시되었던 통일정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첫째 7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미·소 데탕트와 미중 및 일중 관계개선의 국제환경, 남한의 평화통일정책과 지속적 경제발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대두등 북한의 정치, 군사적 역량을 제외한 3대혁명역량이 대체로 약화되는 상황가운데 이에 대한 적응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수세적인 정책이후 적극적으로 국제혁명역량강화와 남한 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북한은 통일 원칙으로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였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은 ‘자주·평화통일·민족적대단결’을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통일방안에 있어 허담의 연설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1960년대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한 미군철수와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남북총선거’ 주장을 삭제하고, 연방제 통일 국가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제시한 점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했다. 조국통일 5대강령을 통하여 제시된 「고려연방공화국」안은 1960년대 남북연방제안을 지속하는 부분과 수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은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주장을 철회하고 대민족 회의를 제안했다는 점이다.<sup>18)</sup>

80년대 들어와 북한은 미소간의 신냉전 대두와 남한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강제적인 체제안정,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등 국제혁명역량과 북한 혁명역량의 강화와 남한 혁명역량의 약화상황 가운데 연방통일 전략과 테러 및 군사도발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통일 전략과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하나의 통일국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방제를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적 또는 중간적 조치로 규정한 60년대의 남북연방제, 70년대의 고려연방제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1973년에 제안된 ‘고려연방공화국’이 독자적인 군사, 외교권을 가지는 연방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데 반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독자적인 연방군의 조직과 남북쌍방의 외교권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명한 연방국가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시기에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로서 예전에 주장하던 자주권 회복논리와 더불어 민족 단합의 논리를 새로이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그리고 통일문제 해결의 주제로서 해외

18) 신평길, 「북한의 통일전략과 연방제」 북한 1996년 8월호 참조

동포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즉 김일성은 통일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해외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 4) 민족정책의 수세기-조선민족 제일주의 시기:내적 통합의 모색

##### (1) 공식적인 민족관의 이해

『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서 고영환은 “스탈린의 민족정의는 서구민족형성로정을 일반화한것으로하여 서구민족의 본질적 징표를 정의하는데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나 민족일반의 본질적 징표를 규정하는데서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민족형성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김정일은 민족개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의 공통성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제시함으로써 현 시기까지 공식적인 민족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제 중심, 계급 우위의 민족개념을 혈통과 언어의 주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념정의에 있어 완전한 전도를 이루었다.

김정일은 1985년 10월 “정론:민족의 징표”를 통하여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주장함으로써 종전의 민족에 대한 경제적 계급론적 해석으로부터 이탈하였다.

이같은 입장은 1986년 7월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로 나타나고 1991년 5월 김정일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민족이 인민대중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으로 공식화되고, 동년 8월 김일성의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하여 민족주의는 전면 복원된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김정일은 86년 7월 15일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김정일은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민족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배타적 성격은 부인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하던 89년 말에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중앙위원회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재차 확인했다.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정의하고 북한을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라고 자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은 한국전쟁이

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다.<sup>19)</sup>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적 한계와 잇따른 경제적 실정에 따라 북한 경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누적된 저성장과 침체의 연장선에서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둘째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변화와 거기서 연유한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종말 분위기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내우외환속에서 북한은 국가의 존속과 김정일세습체제의 공고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북한은 주체사상의 틀안<sup>20)</sup>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이론을 개발하여 체제의 수호 및 회생을 시도했던 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매우 방어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1989년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북한 사회주의를 새롭게 채색할 필요성을 제기시켰던 것이다. 북한은 기존의 민족개념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새롭게 재정립했다.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는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확대해왔던 민족정책을 민족대단결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간의 통일정책과 대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문화유산 발굴에 치중하게 했으며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퇴조를 겪게 된다. 실제 북한의 해외공관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해외선전활동도 경제난때문에 빈도가 줄어들었다. 해외동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지원금을 송금하던 조총련으로부터 각종 현금과 합작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주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는데 치우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궁

19) 김재한 교수는 북한의 체제위기를 대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대내적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외적 측면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나누고 있다. 북한의 경제지표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이래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국내총생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조업 생산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가운데 체제위기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부분은 식량부족이다. 이러한 대내적 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체제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과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시킴으로써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한, 「북한체제의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대응」 참조 통일연구논총 6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20) 북한은 사회주의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주체사상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 선전해왔다. 한편 김정일이 1986년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최근에 단행본으로 된 이론서에서 체계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민족주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1991년 8월 1일에 김일성은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서 자신이 민족주의자임을 주장하였다.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p.382 「또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1995)

핍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조총련에 대한 표면적 지원과 김정일 이상화의 일환인 선전활동은 지속해왔다.

### (2) 선언적인 민족대단결의 전면화

민족대단결은 1991년 김일성이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부터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김일성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로써 민족대단결은 자주와 평화에 선행하는 통일원칙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4월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는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전민족 10대강령’의 발표 이후 북한은 민족주의적 정서의 제고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민족적 동기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나온 직후인 1993년 4월 10일에 평양시 군중지지대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각 시·도별 군중지지대회를 열었으며, 당·정 고위인물과 각종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 또한 4월 12일에는 이 강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문서로 배포하였다. 4월 24일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남한의 정부 당국자, 정당 대표자, 재야 단체 등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실천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95년 1월에는 ‘대민족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용순이 낭독한 「조국해방 50돌을 맞이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라는 보고문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 각종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민족회의>를 열고 이 회합에서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할 것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족대단결 원칙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있다.

### (3) 민족문화유산의 발굴과 복원

최근에 들어와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기하고 민족대단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족문화의 복원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1992년 5월 김일성은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을 방문하고 “왕건이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 말하고 왕릉의 중축공사를 지시했다. 김정일 역시 이 왕건왕릉의 개건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는 1994년 1월 31일, 왕건의 생일 1117돌을 기념하여 완성되었

다.21)

북한이 전통문화의 유산을 복원·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고조선의 단군왕릉 발견과 단군실재설의 주장이다. 북한은 기존에 단군조선과 단군은 왜곡,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1993년 9월 28일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하고 이어 개천절을 하루 앞둔 10월 2일 사회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사실을 통해 단군 유골 및 유물의 발견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과 발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단군릉 발굴을 즈음하여 열린 북한 사회과학원의 학술 대회 역시 단군 실재설을 통해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단군의 후예로서의 단일민족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올해 들어와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한 대동강 일대의 고대 문화의 발굴 및 연구성과를 토대로 고대 이 지역의 문화를 「대동강 문화」로 명명했다. 대동강 문화 명명은 그동안 진행해온 단군과 관련한 역사적 작업에 대한 마무리이자 단군의 상품화를 위한 최종 봉인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4) 조총련 정책<sup>22)</sup>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고려하면서 김정일 우상화와 김정일 주체사상 연구회의 조직화와 민족대단결 원칙의 선전, 현금강요 등의 몇가지 사업을 실시한다.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해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당연시하는 사업을 벌였으며 민족정책의 중요한 내용적 변화인 민족대단결 원칙의 선전을 강화했다. 93년 6월부터 조총련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대한 지지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했고 3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국내불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17,000통의 대남서신을 발송했다.

#### ㄱ) 김정일 우상화 작업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정책은 다각도로 펼쳐졌다. 조총련은 94년을 ‘김정일 위대성 교양의 해’로 정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95년 1월 25일 지진 피해를 입은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1백만달러의 위문금을 보냈고 한덕수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위문과 애도의 뜻을 표했다. 북한 적십자회도 또한 지진피해와 관련해 20만달러의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일은 96년초에 조총련의

21) 전상인, 위의 책, pp.116-126 참조

22) 내외통신, 94-98년 조총련 부분 참조

조직기반 강화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조총련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 체계와 영도체계」를 확고하게 세워날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조총련 조직이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속에 뿌리박은 대중적 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 감소되었던 교육원조비를 김정일의 54회생일(94년 2월)을 기해 조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의 1억 6백 60만엔을 송금했다.

#### ㄴ) 조총련의 경제 지원

조총련은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84년 9월 이후 10여년동안 전체 합영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려 120여개의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등 북한의 절대적인 합영상대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북한의 지나친 통제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외면한 폐쇄정책으로 인해 조총련 합영기업들은 계속 도산하거나 조업을 중단해 94년에는 겨우 20여개의 공장만이 가동되었으며 그나마도 매우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자 북한은 조총련에게 「애국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합영, 합작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게 했다. 북한의 경제난 악화에 의해 무조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김정일은 “조총련의 동포 상공인들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고 상공인들과의 사업 특히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해 더욱 다그쳤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매년 8백억엔의 돈을 북한에 밀반출 해온 조총련으로서는 조직 유지비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조총련 가입자들의 계속적인 탈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총련은 95년 각 지부를 총동원해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대북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96년도에 북한은 ‘조국부강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북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즉 조총련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등 제분야에서의 합작과 교류사업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올해 들어서 김정일은 직접 조총련 제18차 전체대회 앞으로 축전을 보내 대북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정일은 축전에서 “제일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옹호하고 애국 지성을 바쳐 내나라 내조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일동포들이 애국사업에 참된 충신이 되도록 주체사상과 영도체계의 교양사업을 강조할 것을 언급했다.

#### (5) 해외공관의 축소

북한은 90년대 들어 계속적으로 해외공관의 축소를 단행해왔다. 실제 북한정치체제의 선전과 동포사업을 상당 부분 담당했던 해외공관의 축소는 해외동포 정책의 쇠퇴를 나타내는 징후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3월 14일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듯이 경제난으로 인해 해외공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재외공관의 30%정도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 경제사정이 풀릴 때까지 재외대표기구를 30%정도 축소, 조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겸임대사가 발령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해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6) 통일정책

이시기 북한은 소련의 변화와 해체 그리고 냉전체제의 붕괴, 남한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문민정부의 출범, 정권교체, 그리고 전향적 북한 및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경제적 및 안보적 위기 심화 등 북한 정권의 창설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인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하였는바, 체제 유지를 위해 수세적 방어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첫째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에 있어 점차 국제문제적 성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90년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1년 신년사에서는 평화적 이행전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전민족적 단결을 주장하였다. 한편 1992년 신년사에서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조선의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와 관련되어있는 만큼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유관국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주장함으로써 국제문제적 성격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3년 신년사에서는 “조국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민족적 문제임 동시에 유관국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북한이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동구 사회주의 진영 및 소련의 해체에 따른 탈냉전적 신국제질서의 도래와 한국의 북방외교에 따른 북방 삼각관계의 동요에 대한 대응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련방 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쉬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치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 주장을 과도적 또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할 의사를 시사했다.<sup>23)</sup> 이러한 수정된 연방제는 1980년의 통일방안보다 더욱 수세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통일 그 자체보다는 체제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통일원칙으로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조국통일 5대방침」과 「조국

23) 최성, 「북한의 정치구조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pp.99-100 참조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5대방침으로서 평화적 환경 마련, 자유내왕 및 전면개방,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 발전, 대화발전,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1991년 8월1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김일성의 담화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을 거듭 강조하였고,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그동안의 통일관련 주장들을 종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상투적인 선결조건 제시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남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 한계를 엿보게 하였다. 요구사항은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의지 표명,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의 탈피 등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조문파동으로 남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북한은 일관되게 내적인 통합을 강조할 뿐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의 ‘주 대미협상, 중 남북대화’ 전략은 94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에 정립된 대남, 통일정책을 계승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으며 그 기본틀은 ‘통일 3원칙’과 ‘10대강령’의 견지인 것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해왔다. 특히 식량난 속에서 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취하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김영삼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강도높은 비난과 잠수함 사건등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자)는 통일관련 첫 문헌을 발표했다. 이 문헌에 나타난 김정일의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당국이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것이다. 김정일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 국가 창립이며 주요 통일정책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수립’, 남한에 대한 반복 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에 대한 요구, 북미·북일 관계개선 의지 표명 및 통일에 관한 유관국가들의 협조강조등이다. 이러한 8·4 문헌의 실질적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7)재소동포 정책

기존 재소동포에 대한 북한의 다소 무관심했던 정책은 수세기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위기의식의 팽배와 함께 오히려 강화되기에 이른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재소



동포들이 친남한 성향으로 우회하는 기미가 두드러지자 북한은 재소동포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재소동포 적극책의 하나가 '조소친선협회'를 조직하여 동포들을 포함시키고 회원에게 북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북한 방문을 알선하는 것등이었다. 1991년까지 소련내에 16개의 조소친선협회의 지부가 건설되었다.

또한 북한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도시에 소련과 합작으로 식당을 열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평양 오작교를 위시하여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나호트다 등에 식당을 개업하였다. 이들 식당은 순수이윤을 추구하는 식당이 아니라 연락처이고 정보수집과 교환을 겸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북한이 재소동포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의 하나가 영화상영이다.

북한은 친선 사절단, 가무단, 운동선수단 등을 소련에 파견하여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의 재소동포예술단을 초청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단을 초청하기도하여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등 북한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재소동포들의 모국 방문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난, 식량난이 본격화된 90년대 중반 이후는 두드러진 교류 및 정책은 시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 4. 결론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해외공관의 축소에서 나타나듯이 대외정책에서의 위축을 예상하게 한다. 민족정책에서도 해외동포에 대한 부분은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 투자와 선전, 조직력 확대에 있어 수세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에 대한 조직들도 대부분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내적 통합의 기제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족대단결과 민족문화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체제의 위기를 민족을 중요한 화두로 제기하면서 극복하고 있기에 다소 위기국면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면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조직, 선전 사업을 새롭게 강화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이미 50년대부터 시작한 민족정책이 친북성향의 해외동포들에게 호소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현재 북한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교육원조금과 선전, 의식화 사업 등으로 깊이 영향을 받았기에 쉽게 해외동포의 조직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난 이후 북한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이탈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 앞서 살펴본 민족정책에 있다 하겠다.

북한의 민족정책과 민족문제는 몇가지 점에서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당분간 내적통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족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도 수세적으로 남북의 공존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현재적 능력으로는 공세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체제안정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총련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지원요청을 강화하겠지만 일본의 경제 어려움도 중첩되어 북한과 조총련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이외의 여타지역의 해외동포 정책은 현상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배태하고 있는 민족문제가 인권상황과 결부되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의 여파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북일수교 진행과정에서 재일동포의 국적문제와 일본인처 문제가 인권차원에서 새롭게 제시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산가족의 만남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중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산가족의 재회문제가 새로운 민족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80년대부터 해외에 있는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찾기회 등의 모임을 결성해 이산가족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정권수립초기부터 민족지향을 뚜렷하게 하면서 각종 정책을 구사해왔다. 공식적인 민족관의 변화에 선행해 실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지원과 선전, 조직화 사업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에 기반해 몇단계의 과정을 밟아왔던 것이다. 해외동포의 역할이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다. 현재부터라도 민족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무척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민족정책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응 및 공조의 과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주제에 대한 지적 수준과 자료의 한계로 민족정책의 이중적 의미와 비판, 변화의 함의등은 부분적으로 기존 자료를 참고하거나 누락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민족정책이 실행해 옮겨졌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인 구소련연방과 중국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게 되었다. 개별사례에서 이산가족의 문제는 타국과의 비교검토도 추후에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기구분에 반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기존 분절적 연구에 내적 통합성을 부여했다는데 의미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 박종화, 「북한 민족주의 특성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우철, 「북한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장명은, 「북한의 민족주의관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영덕, 「김일성 주체사상의 대외선전활동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유삼열, 「북한의 재일교포정책과 조총련」(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또하나의 북한사회」(나남 1995)  
 박호성, 「북한민족주의의 특성」 「남북한의 민족주의 비교연구」(당대 1997)  
 최 성, 「북한의 정치구조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민중사 1994)  
 김재한, 「북한체제의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대응」 통일연구논총 6권2호(민족통일연구원 1997)  
 정현수, 「김정일 체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 통일문제연구 1995 하반기호(민족통일연구원 1995)

## 2. 단행본

- 임혁백, 「남북한 통합론」(인간사랑 1992)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4)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1995)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서울프레스 1995)  
 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1945-1993」(민족통일연구원 1993)  
 고대아연, 「사할린 잔류 한국 일본인 문제와 일본의 정치」 1994  
 이광규, 「재중한인」(일조각 1994)  
 ———, 「재소한인」(집문당 1993)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출판부 1996)  
 김영광, 「남북한의 재외교민정책에 대한 비교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8  
 통일원, 「북한개요」 199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국토통일원, 「남북한의 민족개념 비교연구」 1978  
 ———, 「남북한의 민족이념」 1978

## 연구논단

# 러시아 연방공산당과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강령에 나타나는 러시아민족주의 비교

송 래 회  
<고려대·석사과정>

## 1. 서론

러시아 민족주의는 현시기 러시아 정치의 주요 동인일 뿐만아니라 그것이 성립한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소비에트 형성기와 그 해체기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성립과 유지까지 일관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러시아 민족주의 내용은 다양한 정치체의 갑옷을 입고 실질적으로 소련과 러시아를 움직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러시아 민족주의는 역사적 연속성과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이며 여전히 러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러시아 민족주의는 현시기 러시아연방은 물론 그밖의 CIS공화국들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러시아 연방에서의 경우, 러시아 민족주의는 소련해체이후 그 계승자로서 신생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 변동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와 그 밖의 CIS공화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 민족주의는 끊을 수 없는 끈의 중심 내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연방공화국에서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끈이 당겨지면 주변 공화국들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힘의 대립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 민족주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경제, 외교라는 다양한 외피를 입고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민족주의는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소련해체 이전부터 소련의 외교를 분석할 때에도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1) 민족 문제에 있어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김병국, 국가·지역·국제체계,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p12-13

주요 분석대상이었던 러시아민족주의는 소련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외교를 살펴보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이해될 수 있다.<sup>2)</sup>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 민족주의가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연속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러시아 정당간에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러시아 민족주의의 특성을 정리한다.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생성되는 역사성과 그 내용<sup>3)</sup>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기본 목표와 정책 선정의 기반 사고를 제공하는 정당을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분석, 비교하여 본다.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변화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 강령을 분석,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민족주의가 갖는 두 가지 현실적 함의 때문이다. 즉 하나는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조직의 강령으로 민족주의가 그 의미를 가지며, 또 하나는 정당들이 행하는 민족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민족주의가 갖기 때문이다.<sup>4)</sup> (p6, 3-6) 러시아 정당을 서구 정당과 같은 반열에 놓고 정당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당의 당수인 쥘가노프, 지리노프스키의 저작도 참고하였다. 이는 아직 서구 개념의 정당이 러시아에 뿌리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정당은 인물 본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 II. 본론

### 1. 러시아 민족주의 의미와 현실적 함의

#### 1) 러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성과 내용

러시아 민족주의는 10세기 그리스 정교를 수용함으로써 정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후 몽골의 지배와 이를 벗어나려는 싸움속에서 정치적 힘을 갖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

2) Alexei Arbatov, Management Conflict In The Former Soviet Union,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p4-5

3)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조정남,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1996'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을 그리스정교, 짜리즘, 반유대주의로 들고 있다. 또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구성요소로 짜리즘, 전체정, 기독교, 지정학적 요소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러시아연방 공산당과 러시아자유민주당 당강령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4) *ibid.*, p.6

해 나가면서 러시아 민족주의는 발아하였다.<sup>5)</sup>(p26, 12)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유럽쪽에 가까운 페트로그라드(레닌그라드)로 옮긴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은 러시아의 국가 기제를 강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19세기에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제국의 팽창기인 니콜라이 1세때는 제국의 변경에서 광범위한 러시아화(russification)이 일어나게 된다.<sup>6)</sup> (p31, 17) 제국주의 시기이후 혁명전에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노일전쟁때 발흥하게 된다. 또한 반유대인종의 성격을 띤 슬라브주의적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레닌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러시아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듯 하지만 이는 제 민족의 불만을 혁명으로 옮기기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sup>7)</sup>(p48, 4-8)

스탈린시기에는 러시아화가 소비에트화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소비에트적 중앙집권화는 자연스럽게 러시아화를 추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지도자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는 이념상 민족주의를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주의 현상을 타파해야하는 모순적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 정교, 짜리즘, 반유대주의(Anti-Semetism)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sup>8)</sup>

그리스 정교는 초기에 도입 이후 러시아 종교화되어 러시아 민족의 내면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소련연방성립후에도 소비에트 민족종교화함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된다. 소련해체 후에는 러시아 민족의 도덕적 순결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짜리즘은 러시아 정치문화에 깊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속성은 동구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도 러시아를 민주주의를 경험한 체코, 헝가리 등과 구별하게 되는 요소로서 유용하며, 앞으로 러시아 정치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9)</sup> 중앙집권적 짜리즘 역시 러시아 민족주의의 상황에 따른 변화와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Anti-Semetism)는 러시아, 소련정치 격변기 마다 나타나는 희생양

5) *ibid.*, p26

6) *ibid.*, p31

7) *ibid.*, p48

8) *ibid.*, p110

9) 린즈와 스테판은 체제이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로 체제이행전의 체제를 꼽고 있다. 이들은 특히 러시아의 경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된 역사적 경험을 주요변수로 생각하고 있다.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398

으로서 유대민족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라토리엄의 총체적 위기를 맞으며 국민적 불만이 극도에 달한 현재 다시 발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 현실적 함의

이러한 역사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는 당대 러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연속성’을 제공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소련시절에는 물론이고 현재의 러시아 정치에도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형태를 달리할 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러시아 정교는 현재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공산당, 자민당이 말하는 ‘러시아 민족의 도덕성의 근간’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당의 당강령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태인에 대한 반감은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는 현상이다. 이는 경제적 위기와 이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유태주의는 러시아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두마에서는 반유태주의를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공산당 소속의 빅토르 일류킨(Victor Ilyukhin)은 12월 15일 ‘엘친의 후원하에 유태인이 정부내의 차지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정부 관직에 배분에 있어 인종적 쿼터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sup>10)</sup>(11월에는 마카쇼프라는 공산당 소속 두마의원이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쥘가노프 등의 당 지도부는 매우 이중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쥘가노프는 ‘우리는 반러시아주의와 반유태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의 두 의원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점은 프리마코프 총리도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제일 정당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는가?’<sup>11)</sup>라고 하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유태인에 대한 테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2월에 크레즈노다르(Krasnodar)라는 남부러시아에 있는 도시에서는 유태인 가정에 대한 살해위협과 이주위협이 공공연히 벌어졌었다.<sup>12)</sup>

한편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시되는 레베지, 쥘가노프, 지리노프스키등은 대중연설에서 자주 ‘강력한 지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으로 ‘짜리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앞으로 러시아의 정치일정에도 정치문화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임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10) AFP, 12월 16일

11) AFP, 12월 16

12) www.russiatoday.com

## 2. 러시아연방공산당 당강령<sup>13)</sup>, 및 쥘가노프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 1) 러시아연방 공산당 당강령에 나타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현재 러시아 연방 공산당 내에는 쥘가노프가 주도하는 세력외에도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골수 스탈린주의자인 니나 안드레예바의 세력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많은 유사 공산당 세력들이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연방 공산당은 체첸을 제외한 러시아연방의 전지역에서 2만 4천여개의 기초조직을 확보하고 54만여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마에서 제 1당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내 최대의 정당이다.<sup>14)</sup>

러시아연방 공산당(이하 공산당)의 강령은 기본적으로 소련연방시절의 불세비즘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소련연방의 부활을 꿈꾸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공산당은 소비에트제도의 회복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들을 사회주의 주체로 재등장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론적으로 민주적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정당의 슬로건에 불과하다. 엘리트정권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율 획득을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민족적 애국주의를 표방하며 이를 러시아의 과거와 이에대한 향수로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 민족주의는 경쟁적 정당체제속에서 몸부림치는 공산당 운명에있어 러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개체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연방공산당 당강령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분은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과 전망, 둘째 부분은 러시아 역사에서의 교훈, 셋째 부분은 최소 강령, 그리고 넷째 부분은 공산당 조직상, 이념상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에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과 그에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러시아는 사면초가의 전환기에 있다. 거짓과 강압에 의한 현재의 통치제도는 우리 조국의 민중들을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자본주의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정치적 반동의 길이며 사회적으로도 퇴보의 길이고, 러시아 문명의 멸망으로 이끄는 민족적 재앙의 길이다.'<sup>15)</sup>(p1, 8-11)

13)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당강령이 책자로 소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공산당 홈페이지 [www.kprf.ru](http://www.kprf.ru)에서 내려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인용되는 내용은 [www.kprg.ru](http://www.kprg.ru)에서의 페이지에 바탕한 것이다. 또한 인용 페이지는 물론 줄까지 함께 표시한다. 러시아어를 직역하기에 어색한 것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4) 문수연,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정강 및 정책방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130

15) [www.kprf.ru](http://www.kprf.ru), ПРОГНАММА, p 1



이와 같이 공산당 강령은 옅친 집권체제를 기만과 강압으로 규정하고 옅친정권이 인민들을 유행이 지난 자본주의 체제로 돌려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현 옅친 정부를 친 자본주의, 친 서방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서방에 대한 반감이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역사 인식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과거 소련시절에 대한 향수 그 자체이다. 이 향수를 공산당은 러시아민족주의와 교묘히 연결시키고 있다.

‘러시아 역사는 전적으로 역사의 기관차의 역할과 같이 혁명의 역할이라는 관점을 고수한다.....러시아의 미래는 러시아의 건설적 전통과 역사적 계승의 토대 위에서만 결설될 수 있다.’<sup>16)</sup>(p4,- 34-37)

이와 같은 관점은 러시아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선민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점은 러시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나타난다.

‘러시아의 민족적 통일성을 보존해야한다. 소비에트 민중의 갱신된 연합체를 재건해야한다. 러시아 민중의 민족적 단일성을 보장해야한다.....경제생활의 국가 조절을 통하여 경제적 위기로 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러시아 공산당은 러시아 민중의 민족적 해방 투쟁을 활성화 하는 과제를 세운다.’<sup>17)</sup>(p8, 2-3)

이와 같이 공산당의 투쟁 목표는 사실상 ‘러시아의 민족적 단일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 이념과는 모순적인 것이다. 소비에트 재건에 대한 향수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지지세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표현에 다름아니다. 이는 투쟁의 연대 대상을 설정하는 데에서도 엇볼 수 있다.

‘그러한 투쟁에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동맹자들이 있어야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중립주의적이며 계속적으로 민주주의적 스펙트럼의 정당들이며 진보적인 애국적 행동을 보이는 단체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여성,기업인, 예술단체, 모든 전통적 종교적 연합체이다.....우리의 확신이란 러시아의 민족적 국가적 관심으로 오늘날 사회주의와 소비에트 민중권력의 형성을 위해서 이와 반하는 세력과 결속하여 투쟁하는 것이다.’<sup>18)</sup>(p8,11-18)

이와 같이 투쟁의 연대세력에 기업인은 물론 전통적 종교적 연합체까지 명시함으로써

16) *ibid.*, p.4

17) *ibid.*, p8

18) *ibid.*, p8

과거 공산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민족주의적 색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또한 공산당의 기본 목표를 노동자, 농민 및 민족적 인텔리겐차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선언하고, 인민주권, 정의, 애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당 강령에는 공산당이 ‘러시아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심화시켜 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점은 공산당 강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러시아민족주의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두고 노동자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의 재건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매우 상반되는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에서의 민족은 소멸의 대상이며 과도기적으로 피압박 민족의 소비에트화에 있어서만이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의 해결을 러시아 공산당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친화성으로 교묘히 방어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과거 소련시절에 맑스-레닌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를 역전시켜 재생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으로 민족주의를 방패로 사용하였다면, 이제는 러시아 민족주의를 창으로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방패로 택한 셈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지성사에서 슬라브주의라는 민족주의적 관점과 서구지향적 관점사이에서 슬라브주의가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면에는 유태인(맑스)가 만든 사상은 러시아의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러시아는 이전부터 러시아정교, 미르(농촌공동체)등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개념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러시아 민족주의 우월주의 색채가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부분 즉, 최소 강령의 부분에는 연금생활자,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의 복지 등을 구체적 대안없이 선언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세 번째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애국주의’에 대한 언급이다.

‘애국주의 정당, 세계주의적인 정당, 민중을 사랑하는 정당으로 러시아 공산당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 조국, 범민족적 동의와 영원한 민중 사랑 부흥 보장,
- 러시아와 다른 국가, 민족들에대한 역사적 방어,
- 민족의 권리, 평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의 국가적 순수성에대한 개개인이 역사적 책임감을 갖으며, 분리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소비니즘의 민족적 정치의 실현<sup>19)</sup>(p12, 2-9)

19) *ibid.*, p11

‘인민 민족주의, 애국적 민족주의’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현강령에서 계급투쟁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다. 현재 공산당은 ‘계급’보다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투쟁에 기반한 맑스-레닌주의는 현재 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되고 러시아의 상황에 비추어 이데올로기적 매력이 덜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민족주의를 통하여 당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만들려하고 있다. ‘계급’의 자리에 ‘민족’을 위치시킴으로서 공산당은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보다 유연한 연합의 주체로 활약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엿보인다.

마지막 부분에서 공산당 자체의 조직에 대한 언급에서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목은 ‘러시아 공산당의 순수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러시아에서 국민의 권리와 인간 자유의 보호, 구소련 국가들에있는 협력자들의 권리와 장점들의 보호, 조국 역사와 문화, 애국심, 세계민족주의자들의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 공산당 구성원은 정신적으로 순수하며 민중들을 계몽하여야 한다. 공산당은 기회주의자들을 허용치 않는다.’<sup>20)</sup>(p13, 5-9)

## 2) 쥬가노프의 저작에 나타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쥬가노프는 1944년 6월 26일 생으로 66년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이래 소련공산당에서 이데올로기를 담당해 왔던 인물이다. 그가 갖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그의 저서 ‘러시아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에 잘 나타나있다.

그의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문명권적 인식이 바탕되어 있다. 그는 10세기를 그리정교문명, 서유럽문명, 그리고 회교문명으로 보고 있다.<sup>21)</sup>(p29) 이를 바탕으로 16,17세기의 서구의 영토확장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식민지화방법을 차별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러시아의 식민지화 방법’이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문명화시키려는’ 오만에 찬 서구식 추진방법과는 전혀 다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sup>22)</sup>(p33)

이와 같은 러시아 문명권을 서유럽권과 대비하는 차별적 인식은 산업혁명시기를 규정하는데에도 나타난다. 즉 ‘슬라브문명은 서구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투라는 특별한 의미를 획득한다.’<sup>23)</sup>(p34)라고 함으로서 차별적 인식은 서구유럽에 대한 우월적 인식으로

20) *ibid.*, p12

21) 젠나지 안드레예비치 쥬가노프, 김명호역, 러시아는 무엇을 꿈꾸는가, (서울,한울 1996) p29

22) *ibid.*, p33

23) *ibid.*, p34

나타난다. 이는 러시아민족주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슬라브주의의 재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은 급기야 러시아 제국의 도덕적 우월으로 나타난다. 즉,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소비에트정권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도덕적 이상을 러시아제국으로부터 계승하였다고 하기에 이른다.<sup>24)</sup>(p35) 나아가 그는 소련을 러시아의 오랜 생존을 위한 주요전략 문제, 건설적인 세계관의 획득과 민족적 정신건강을 복원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는 대러시아주의로 발전한다. 즉, '러시아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이제까지 보존되어 왔던 경제,인구, 정치적 가능성과 함께 수세기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독특한 '지정학적 균형'의 역할, 즉 세계 지정학의 세력균형과 상호 이해관계의 정당한 계산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되찾으려는 러시아 대국의 지향이 그 근간에 놓여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sup>25)</sup>(p49)'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대러시아주의는 그의 역사인식에 비추어 소련을 러시아가 대러시아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현재 러시아의 과제를 그러한 소련체제의 부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가노프의 이러한 저술은 과연 그가 공산주의자인지 극우민족주의자인지를 의심케할 정도로 러시아민족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러시아민족주의자는 대러시아와 관련을 맺고 있다.

### 3. 러시아 자유민주당 당강령<sup>26)</sup>에 나타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은 1990년에 법률가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주도로 창당되었다. 표면상 중도정당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소련 제국의 회복과 이를 위해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초극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또한 러시아연방에서 민족 분류(ethnic conflict)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의 경계를 아예 없애 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는 정당이다.<sup>27)</sup>

자유민주당의 당 강령은 크게 10개의 장으로 나타나 있다. 즉, 1. 왜 자유민주당이 민중에게 필요한가 2. 어떠한 정부가 필요한가 3.러시아의 민족적 안보 4.해외정책 5.경제 6.사회정책 7.여성정책 8.젊은이들에 대한 정책 9. 선거와 두마에서 자유민주당과 지리노프스키의 활약 10앞으로의 과제 등이다. 여기에서 자유민주당이 갖는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은 3.러

24) *ibid.*, p35

25) *ibid.*, p49

26)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당강령 역시 책자가 없어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홈페이지 [www.ldpr.ru](http://www.ldpr.ru)에서 내려 받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인용된 페이지는 [www.ldpr.ru](http://www.ldpr.ru)에 나온 당강령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27) [www.nupi.no/cgi-win/russland](http://www.nupi.no/cgi-win/russland)

시아의 민족적 안보 4. 해외정책 등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산당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반서방적인 성격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은 러시아를 버랑으로 물고 있다.....우리 도시의 거리에는 부랑자가 들끓고 나토의 로켓은 우리의 모든 도시를 겨누고 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다.<sup>28)</sup>(p2, 9-10)

과거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를 매개로 지지기반을 넓히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점을 공산당과는 구별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당 자신들은 소련을 해체시킨 공산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을 구별함으로써 자신들이 갖는 민족주의적 색채의 순수함을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소련시절 이념적으로 공고했던 우리 공동체는 창이가 샘솟았다.<sup>29)</sup>(p2, 21-22) 그러나 차츰 활력을 잃어 갔고 노멘크라투라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불을 지폈다. 서방이 그들을 도왔다. 썩은 일부 고위층의 이러한 노력은 모든이들을 배신하는 행위였다.'<sup>30)</sup> (p2, 28-30)

'우리당은 이전의 체제와도 현재의 체제와도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당은 구 소련이 붕괴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민주당은 우리 민중의 민족의식이 조직화된 끝에 생겨난 것이다.'<sup>31)</sup> (p2,37-44)

'자유민주당은 반민족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당이다.'<sup>32)</sup>(p3, 9)

'오늘날 애국주의라는 옷을 모든 정당이 입었지만 우리당이야말로 다른 어떤 당보다 민족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사회주의 정부에 의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거부한다.'<sup>33)</sup>(p4, 44)

'우리는 계급투쟁을 옹호하는 공산주의자, 급진적 민주주의자, 그밖의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왕정주의자 등의 모든 급진주의자들을 적으로 구별한다.'<sup>34)</sup> (p5, 5)

어떠한 정부가 필요한가에 대한 장에서는 구소련에 대한 향수를 러시아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구소련이 갖는 다민족 연방으로서의 체제는 러시아민족이 갖는 역사적 포용성 때문에 유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앞의 논의와 연관되어 소련영토를 회복하되 그 정치체제는 계급에 기초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라는 유추를 가능케한다. 따

28) [www.ldpr.ru/prog](http://www.ldpr.ru/prog) ПРОГ АММА p2

29) *ibid.*, p2

30) *ibid.*, p2

31) *ibid.*, p2

32) *ibid.*, p3

33) *ibid.*, p4

34) *ibid.*, p5

라서 현재 구소련의 여러 공화국들에 있는 러시아인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된다.

'맑시즘에 기초한 정부는 현재에는 필요치 않다.'<sup>35)</sup> (p6, 35)

'러시아 민중은 러시아의 99개 민족을 보호했을 정도로 너그러웠다. 이는 공산당의 계획이 아니라 러시아 역사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sup>36)</sup> (p7, 22-27)

'그동안의 정치상황은 러시아 민중에게 고통을 안겼다. 모스크바, 발틱국가들, 타지크, 중앙러시아, 북 카프카즈등등에서 러시아 민중은 큰 고통을 받았다.'

'민족주의는 과거 러시아의 자율성에 권력을 주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이다.'<sup>37)</sup> (p8, 22-24)

러시아의 민족적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자유민주당이 갖는 극우민족주의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련해체이후 러시아 민중이 갖고 있는 수퍼파워에서의 탈락으로 인한 박탈감을 러시아의 안보와 연결시키며 지지세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자유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의 민족적, 정부적 안전이다. 이 때문에 당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20세기 우리 조국의 경험과 국내·국제적인 상황을 참고로 할 것이다.'<sup>38)</sup> (p10, 4-8)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은 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안전적 시스템을 모두 붕괴시켰다.'<sup>39)</sup> (p10, 23)

자유민주당의 전투적 정책에는 앞서서의 러시아 민족의 안전과 관련하여 냉전 종식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러시아 쪽으로 나토가 확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흡사 서방이 냉전에서 승리하였고, 이로인해 핵전쟁의 두려움에서 인류가 벗어난 듯하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sup>40)</sup>(p12, 20-23)

'러시아가 나토(근본적으로 미국) 국가들의 재무장, 군비확장을 지연시키면 새로운 군비 확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해결할 것이다.'<sup>41)</sup>(p14, 8-9)

35) *ibid.*, p6

36) *ibid.*, p7

37) *ibid.*, p8

38) *ibid.*, p10

39) *ibid.*, p10

40) *ibid.*, p12

41) *ibid.*, p14

해외정책에 대한 부분에는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문명권적 인식을 바탕으로 반서방적 정책 추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세계와의 경제적 접촉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순수성을 보전해야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지정학적 범위는 5개로 나눌 수 있다. -서방 기독교권, -동방 기독교권, -이슬람교권, -불교권, -인도와 아프리카등 그밖의 지역'<sup>42)</sup> (p16, 20-26)

'러시아 공화국의 민족안전은 서방축이 소련의 영토로 원자재 확보와 판로를 확장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sup>43)</sup> (p17, 22-25)

대 CIS정책에 대한 부분은 자유민주당의 민족정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소련해체후에도 각 공화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인을 매개로 각 공화국들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의 필요에 따라 CIS 자체를 파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등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현실적인 정책은 이중 공민권에 대한 부분이다. 즉, 구소련지역의 공화국들간의 이중 공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곳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중심의 소련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IS 각 나라에대한 러시아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공화국들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유연한 각각의 독립적인 정책적 노선을 취한다.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에스토니아,라트비아에서 반정도를 차지하는 한 이들 정부의 내정에는 러시아의 외부로서의 몫이 내재되어있다.'<sup>44)</sup> (p18, 33-36)

'CIS에 대한 조약중 러시아에게 무엇이든 손해가 되는 조약은 파기한다.'<sup>45)</sup> (p19, 4)

'자유민주당의 대외정책목표는 구소련의 안전보장을 러시아가 계승하겠다는 기초위에 있다. 따라서 발틱과 CIS 공화국들에서의 이중공민권 취득에 대해 조약을 체결해야한다.'<sup>46)</sup> (p19, 13-16)

#### 4. 비교분석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당 강력과 유가노프의 저작에는 많은 내용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42) *ibid.*, p16

43) *ibid.*, p17

44) *ibid.*, p18

45) *ibid.*, p19

46) *ibid.*, p19

이는 소련시절 부터 이념부분을 담당해왔던 주가노프가 당강령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한다. 자유민주당의 당 강령은 자유민주당이 러시아 정치에서 보여주는 실체와는 좀더 유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점을 유의하면서 당 강령을 살펴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극우민족주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과 관련에서 이를 비교해 보면 먼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다. 공산당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러시아 민족이 갖는 선민적 의식까지 연결 시키고 있다. 이는 공산당이 공산주의 이념보다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모순점을 갖게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냉전이후 형성되는 미국중심 질서에 대해 거부를 표시하는 근거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자유민주당은 러시아의 민족적 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의 양대륙적 복합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당 당령에 나타나는 ‘애국적 민족주의’와 자유민주당의 강령에 나타나는 ‘민족적 안전’은 대러시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교에대한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공산당은 러시아 정교를 종교체제로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 연합의 대상으로까지 선택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역시 러시아 정교를 러시아의 도덕적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핵심으로서 작용하는 러시아 정교가 러시아 정치에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반유대주의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 러시아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하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를 최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공산당은 이를 지지율 상승과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가 당 존립의 기반이며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에대한 공산당측의 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산당, 자유민주당 모두 강력한 러시아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의 부활을 양당 모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점에 있어 양측은 차별성을 갖기도 한다. 공산당의 경우 구소련의 회복은 형식상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념은 마르크스의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러시아 민족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유민주당은 소련 공산당 계승이 소련해체의 명애를 계승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아래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소련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영토적 회복을 통한 대러시아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자유민주당은 구소련지역에 있어 각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보호를 위해 이중공민권을 주장하는 등 러시아 중심의 CIS 질서 형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당이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당의 지지세력 확대, 정권 획득 가능성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민주당의 경우 러시아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호소하고 있으나 정책,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립경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정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정권 획득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한편 공산당의 경우 러시아 민족주의는 좀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 강조는 공산당 내부의 분열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주류적 세력 말고도 공산당내에는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열은 공산당의 진로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공산당이 집권하기 전에 공산당 자체가 분해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소련 해체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러시아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즉, 소련체제에서 누적되어온 민족적 갈등이 분출되어 연방구조가 해체되었다는 의미이다.<sup>47)</sup>(p213, 5-7) 따라서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의 각 국가들에서 탄생한 정권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모두 띠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민족주의의 동력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민족주의는 러시아연방의 성립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 정치체제를 분석, 묘사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는 러시아민족주의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러시아 정교, 반유태주의,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강조, 소련의 회복등 전제적 요소들은 러시아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당 강령에도 잘 들어나고 있다. 즉, 소련의 해체를 불러 일으킬 때의 러시아 민족주의가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소련해체후 러시아 연방에서의 러시아 민족주의는 다양한 정당, 인물들에 의해 좀더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민족주의는 여전히 러시아 현실정치에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7) 조정남,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 출판부, 1996), p213

## 연구논단

## 남·북한 재일동포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고 병 국

&lt;고려대·석사과정&gt;

## I. 서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일동포<sup>1)</sup>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민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민족’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결합될 때만이 재일동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방 후부터 남·북한이 각각 시행해 온 재일동포 정책을 볼 때, 양자 모두 ‘일본’에 대한 이해와 ‘민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단순히 남·북한의 경쟁적 관계만을 염두하여 임기응변적 대응을 해 온 모습이 역력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은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한민족’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도 아닌 ‘제 3인’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해지게 되었다.<sup>2)</sup> 물론, 그러한 결과에는 그들 자신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일본 당국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국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백낙청은 21세기 한민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한반도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그 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공동체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존립하는 의의가 무엇일 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sup>3)</sup> 나아가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다국적 민족 공동체(multi-national ethnic community)’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가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때의 북한이든, 지금의 남한이든 이러한 구심력을 행사할 만한 모범사회는 못된다고 지적함으로써,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의 남·북한 어느쪽도 해외동포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60만 이상의

- 1)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에 대한 호칭으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 등등이 사용된다. 현재, 재일 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나 본 논문에서는 호칭에 대하여 특별한 구분이 없이 문맥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 2) 윤건차, ‘재일’을 산다는 것, 교포정책자료(제53집) pp. 27-31.
- 3)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창작과 비평사, 1998) pp. 188-190.

재일동포에 대한 남·북한 정책이 가장 확실한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의 재일동포 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취합하여 장차 한반도가 '다국적 민족 공동체'의 중심체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 재일동포 정책의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 침략 下에서의 '재일 조선인 형성 과정'과 '일본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한·일관계 하에서 갖는 재일동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다음으로 남한의 재일동포 정책(한일회담과 법적지위 협정, 조총련 산하 동포 모국방문 사업)과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북송사업, 교육원조비 송금 및 민족교육)의 특성 및 문제점, 나아가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순서로 된다.

## II. '재일 조선인'의 형성 과정

재일 조선인의 증가를 대략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먼저 1910년에서 1919년까지의 토지 조사 사업이 완료된 시기으로써, 이때 25,815명이 증가하였고, 1920년에서 1930년까지의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된 시기에는 271,486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1931년에서 1938년까지의 중국 대륙 침략기에는 501,787명이 증가하였고, 1939년에서 1945년까지의 전시체제 강제연행시기에는 무려 1,136,965명이 증가하여 일제의 패전 무렵에는 약 200만명에 달하게 된다.<표 1>

한일합병 직후 일본은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토지수용령이라는 실질적 토지 수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은 생활 기반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소작 농민으로 전락되든가,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저임금의 노동자가 되었다. 이때 일본은 한민족이 일본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또한 한국에서의 흉작은 생계연명을 위한 일본으로의 이주를 부추기게 된다. 이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약 90% 이상의 조선인들은 주로 소작 농민과 미숙련 노동자들이었다. 제 1차 대전은 일본 경제를 자극하여 급속도로 팽창시켰고, 이에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어 대량의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일본에 건너 온 조선인들의 값싼 노동력이 대량으로 흡수되었다. 육체 노동자가 대부분인 이들 조선인은 일본 노동자보다 약 25-30%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상태에서 최하류의 생활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의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 한국 농촌은 더욱 극심하게 피폐되었으며, 따라서 기아를 탈피하기 위한 渡日이 증가하여 1928년에는 1년동안 약 9만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27년에서 1929년 사이의 세계 경제 대공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인들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渡日은 계속 되었고, 재일 조선인들은 기아를 겨우 면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한편, 그 당시 일본은 경제 공황으로 파생된 경제적 어려움을 식민지인 한국에 전가시키고 그 위기를 중국대륙 침략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1931년의 만주 사변으로 중·일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본의 공업은 급속이 팽창하게 된다. 공업이 재기하면서 1933년부터 1936년 초까지 일본 공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2배로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의 도일을 강요하였다. 이시기 조선인의 도일은 매년 5만명에서 7만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주로 중·일 전쟁에 따른 군수 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졌다.

중·일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던 시기, 한반도는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지로 철저히 수탈되었다.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군국주의 체제를 확고히 굳혔고, 1939년 조선 총독부는 소위 ‘국민동원계획’을 세워 1940년에 ‘조선직업소개령’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 노동력의 일본 유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했다. 특히 1938년 일본 정부는 국가의 주요산업(군수산업)에 한국 노동자를 연행하여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수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용과 다름이 없었다.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연행을 허가했으며, 이렇게 연행된 노동자들은 주로 석탄, 광산, 토목공사에 배치되었다. 전쟁의 막바지인 1942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모집을 조선 징집령으로 바꾸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한국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으며, 1944년에 조선 징병령을 실시하여 한국 청년들을 징발함으로써 2차대전 중 동원된 조선인의 수는 약 200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終戰까지 재일 조선인은 약 236만명이 살고 있었고, 종전 직후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약 170만명 내지 190만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1948년까지 약 60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하게 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 침략기 동안 이미 한국에서의 생계 기반을 상실한 자들이었다.

### Ⅲ. 일본의 재일 한국·조선인 정책

#### 1. 재일 한국·조선인 정책의 일반적 특징

재일한국인의 현실과 동태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 ① 재일 한국조선인은 법률상 외국인으로 재류하고 있다.
- ② 재일 한국조선인은 일본사회에 정착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 ③ 일본에서 출생하고, 일본에 밀착되어 있는 2세, 3세가 재일한국조선인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④ 재일한국 조선인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 한국조선인이 되었다.
- ⑤ 재일 한국조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연혈연관계가 희박하고 사회경제체제가 다른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 기반한 일본 정부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 ① 외국인, 즉 한국인으로서 그애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입장-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정책.
- ② 일본인이 되어 일본인으로서 생활하는 입장-귀화를 권하는 정책.
- ③ 조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입장-귀국을 권고하는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일교포에 대한 과거 일본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추방과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갖가지 사회적 억제책을 동원하여 일본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노골적인 추방정책이었다. 학교 폐쇄령이나 조총련계의 복송허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재일 한국·조선인이 일본에서 사는 것이 심화·안정되고, 또한 일본적 삶과 사고방식에 더 익숙한 2세 3세로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추방정책을 동화정책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등록법, 출입국관리제도, 그리고 귀화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정책의 단면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외국인 등록법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연합국 사령부는 재일 조선인과 대만인 중 귀환 희망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연합국 사령부의 각서 형식으로 조선인, 중국인 등의 등록령을 1946년 3월에 발

4) 민관식, 재일본 한국인(아세아 정책 연구원, 1990)

표·시행하였다. 이 각서에 의한 등록령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도의 법령 입안에 착수해서 1947년 4월에 외국인 등록령의 공포를 결정하였고, 같은 해 5월 2일에 시행하였다. 이 법령은 재일 조선인 등 일본거주 외국인들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자에게는 형벌을 과하며, 최종적으로는 강제 퇴거도 가능케 하는 재일 한국인의 단속을 위한 관리령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1951년 포츠담 칙령 폐지에 따라 이 법령의 설립 근거가 없어지게 되자,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령을 일부 개정하여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1952년 4월 28일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령과 외국인 등록법은 재일 한국·조선인을 관리, 규제, 탄압하는 2대 기본법<sup>5)</sup>이 되었다.

외국인 등록제도의 목적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 실태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해서 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해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법이 치안 차원에서 재일 한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비인도적 법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6)</sup> 특히 지문날인의 경우 이는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되었다. 몇차례의 임시 방편적인 개정 과정을 거친 외국인 등록법은 '1991년 합의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에 따라,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문 요구는 폐지되었다. 영주자에 대한 지문등록이 폐지되는 대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새로 신설된 제도가 서명 및 가족 등록제이다. 즉 외국인 등록시 본인에 관한 각종 인적사항 외에 세대주,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본인 등록 원표에 동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인 등록법 분야에서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는 계속 되었고 다만 재일교포의 입장을 배려한 상식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만이 약속되었다.

### 3. 출입국 관리제도

출입국 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영주권, 재입국 허가 그리고 퇴거강제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일본에 거주하는 일반 외국인이 다시 귀환할 목적하에 일시 출국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1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91년 합의각서'의 이행사항으로 제정된 출입국 관리 특별법에 따라 특별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원래의 재입국 허가 기간을 추가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외국인 등록령과 출입국 관리령은 명목상 재일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률이나 당시 재일 외국인의 90%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양 법률은 본질적으로 재일 한국인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6) 김상현, 재일한국인(한민족, 1988) pp. 355-356.

따라서 일본을 출국한 특별 영주권자는 총 5년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출입국 관리제도 중 재일한국조선인의 생활과 가장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것은 퇴거 강제 조항이다. 모든 생활 근거가 재유국에 있는 정주외국인의 강제 퇴거는 곧 자국민의 국외 추방과 동일한 것으로, 재일한국인과 같은 영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가족의 이산, 재산 포기, 생활근거 박탈 등 많은 인도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4. 귀화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당국은 60만이 넘는 재일교포를 언제까지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일교포를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일본사회로 편입시키려는 동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동화정책의 수단이 곧 귀화제도이다. 이에 대해 김영달은 '귀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재일교포의 일본 정착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귀화는 그 정착한 재일교포를 일본사회로 동화융합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 일본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면 가능한 한 재일교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중심표적이 되고 있다. 즉 재일교포의 경우 일본동화의 중착점이 자연스레 귀화로 종결된다는 것보다는, 귀화가 이들의 일본사회로의 동화를 촉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귀화자가 재일교포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 귀화허가를 재일교포 사회의 분산책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다.<sup>7)</sup>

일본의 최종적 목표는 재일교포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일교포 문제를 없애는 근원적 방법은 재일교포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귀화는 그같은 목표달성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85년부터 일본의 현행 국적법<sup>8)</sup>이 일본인과 어떠

7)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p. 176-178.

8) 1985년부터 시행된 국적법 개정의 핵심적인 골자는 출생에 관한 일본 국적 취득에 관하여 구법상의 부계 혈통주의를 포기하고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한 점이었다. 개정법의 부모양계 혈통주의는,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일본인을 배우자로 맞고있는 재일교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첫해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재일교포의 수는 68만 3313명이었다. 1985년 이들의 결혼 통계를 보면, 재일교포간 혼인이 27.9%, 재일교포 부 일본인 처 혼인이 29.3%, 일본인 부 재일교포 처의 혼인이 4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약 30%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룹의 자식은 이전까지 한국 국적으로 태어났으나 1985년부터는 한일 이중 국적자로 출생하게 된다. 세 그룹이 평균적으로 동일한 숫자의 자식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한일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출생자 수의 감소, 귀화자 증가, 이중국적자 출생자의 증가와 그들의 일본국적 유지 추세가 복합된다면 재일교포 사회의 규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 혈연 관계만 있어도 그는 일본인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이는 곧 재일교포 신생아의 대폭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그와 더불어 귀화의 계속적 확대 허가는 재일교포 자체를 없애려는 목표달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9)</sup>

## IV. 남한의 재일동포 정책

### 1. 한일회담 및 법적지위협정

한국은 1948년 국적법에 의하여 재일 한국인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고 1949년 1월 29일 주일대표부를 설치하였고, 그해 말부터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재외국민 등록업무를 실시하였으며, 1950년 1월 14일 주일대표부가 창설되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일 외교창구가 설치되었다. 1951년 10월 예비회담으로부터 시작되어 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모든 재일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받으려고 하였고, 이들의 특수한 지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확립시키느냐 하는 것을 교섭하였다. 당시 민단계, 중립계 및 조총련계로 갈라져있던 재일동포 사회로부터 그들의 선심을 얻어야 할 입장에 있던 한국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다.<sup>10)</sup>

한일회담이 근본적으로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협정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방 이후 1965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재일 한국인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지위협정은 실질적으로 재일한국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1) 법적지위협정 이전의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sup>11)</sup>

##### ① 한일 합병기

합병으로 인하여 해외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조선인은 일단 대외적으로 일본신민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공식적 국적이 일본이었다 할 지라도 일제는 대내적으로 합병기간

9) 정인섭, 앞의 글 p.178.

10) 한승조, 한일회담과 박정희, 『근현대사 강좌』 95년 통권 제6호 pp. 181-182

11) 법적 지위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교포 정책 자료(제 52집)』에서 요약.



내내 일본인과 구별되는 조선인이라는 법적 신분을 유지시켰다. 즉 일제는 일본 본토를 內地라 하고 청일전쟁 이후부터 침략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지역을 外地라고 구별하였는데, 각 외지는 일본 제국 내에서 별도의 부분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신분상 이들 외지에 속한자는 외지인이라 칭하였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신분상 소속은 조선이지 일본(내지)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거주자를 포함하여 조선인은 호(민)적을 기준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외지인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조선인에 관한 이같은 법적 구별은 식민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 ② 연합국 통치기

일본에 진주한 연합군은 재일 한인이 단순한 패전 일본의 신민이 아니라 제 2차대전 종료로 인하여 독립이 예정된 민족임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점령기간 중 그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한 방침 설정이 없었던 듯 하다.<sup>12)</sup> 따라서 점령지의 질서 확보에 1차적 관심을 갖고 있던 연합국 사령부는 철저한 치안 유지적 관점에서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였다. 즉, 말썽의 소지가 있는 재일 외국인, 특히 재일 교포는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로 송환시킨다는 것이 연합국 사령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일본에 계속 잔류하는 한 원칙적으로 일본인, 즉 적국인 대우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렇다고하여 일본 정부가 재일 교포를 모든 면에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부인하였다. 1945년 이전에는 재일한인에게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1945년의 중의원 선거법 개정, 1947년의 참의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재일교포의 참정권이 정지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7년 5월부터 외국인 등록령이 적용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제목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는 재일 조선인 및 대만인 뿐이었다. 외국인 등록령 제 11조는 '대만인 중 내무대신이 정한자와 조선인은 본 칙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분간 이들을 외국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등록령을 제정한 결과가 되었다.

### ③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에 서명한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12) GHQ는 '일본 점령 및 관리를 위한 지령'에서 '조선인을 군사상 허가되는 한 해방민족으로서 취급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적국인으로 취급된다.'라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했다. 또한 1946년 11월 12일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지는 자'라고 발표한다.

이 조약의 발효를 기하여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약 발효일을 9일 앞둔 1952년 4월 19일 아직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대한 국적 및 호적사무 처리에 관하여’라는 民事甲通達 제 438호를 발하면서 모든 재일교포는 외국인으로 된다고 공표하였다.

194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재일교포를 외국인화 시킨 후 이들에게 출입국 관리령과 외국인 등록법 등 외국인 관리법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시켰다. 그러나 재일 한인의 경우 본국정부 발행의 여권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일본정부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단 일본 정부는 이른바 법126호를 통하여 종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교포에게는 출입국관리령상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당분간’ 일본에 살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태어난 法126號者의 자는 3년간 체류허가만을 받는 特定在留者로 분류되었고, 훗날 태어난 특정재유자의 자는 법무장관이 정하는 3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일본 체류를 인정 받는 特別在留者로 취급되었다.

## 2) 1965년 법적 지위 협정

5·16이후 한국의 군사정부는 정권 안정화 수단의 일환으로 대미·대일 외교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협력을 얻기 위하여 한일 회담에 매우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다른 조약과 함께 법적지위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였고, 1967년 1월 17일부터 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법적지위협정’의 내용은 크게 영주권 부여 범위, 퇴거 강제 사유, 일본 내 처우로 구분된다. 법적지위 협정 제 1조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내 계속 거주자(갑), 그들의 직계비속으로 협정영주권 신청 만료일인 1971년 1월 16일 이전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한자(을)와 갑 또는 을의 1대 후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종래의 법126호에 의하여 ‘당분간’ 일본에 살 권리만 인정받았던 재일교포에게 재유권을 보다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협정 영주권 부여 대상자 선별에 있어 ‘계속거주’를 입증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며, 일본 당국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협정 영주권 신청이 예상의외로 부진하게 되자 한일 양국은 ‘협정영주 허가의 신청을 한 자가 제 2회 외국인등록(1950.1-1952.9)을 필하고, 신청시까지 불법입국 용의에 의하여 퇴거강제의 수속을 거친 일이 없는 자에 관하여는 새로이 사실조사를 하는 일 없이 협정영주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완화조치로 인해 1971년 1월 16일까지 협정영주권 신청자는 35

만 1천 9백 55명에 달하였다.<sup>13)</sup>

### 3) 법적지위협정의 문제점 및 원인

#### ① 문제점

협정영주권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우선 재일교포가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일본에 영주하고 있었으며, 체류자격은 여하간에 협정 영주권이 없어도 일본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명분적인 측면 외에는 실리적인 의미가 크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1982년부터 特例永住權이 부여된 이후에는 그러한 명목상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협정영주권은 이른바 협정영주 3대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규정이 없었다.

퇴거 강제 사유에 대해서는 협정영주권자의 경우 내란, 외환, 국교 외교관계, 마약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때만 퇴거강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볼 때 법적 지위 협정은 퇴거 강제 사유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창설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국 또는 제 3국이 추방자를 인수해야만 국외 퇴거강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협정 이전 재일교포의 물리적 퇴거강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일 미수교 상태에서 재일교포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로 하여금 피추방 재일교포를 인수하도록 공식화한 셈이다.

한편, 법적지위협정 제 4조는 협정영주권자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법적지위협정 제 5조는 협정영주권자에 대하여도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확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일반 외국인과 같은 위치로 낮추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법적지위협정 상 권리의 대부분은 협정체결 이전에도 재일교포에게

13) 재일교포중 협정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숫자의 다수는 이른바 조총련계였다. 이들은 협정 영주권이 한국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청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법적지위 협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52년 이래의 법적 지위인 법126호, 법4-1-16-2(特定在留者; 구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항 16호에 따른 동 시행규칙 제 2조 2호 해당자; 매 3년마다 체류 허가 갱신 필요), 법4-1-16-3(特定在留者의 자; 통상 3년간의 재류허가는 받았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의 체류 자격을 고수하였다. '당분간'만으로 예정되었던 비정상적 체류 자격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일본은 이민조약 가입에 즈음한 1981년의 출입국 관리령 제정시 이른바 특례영주제를 도입하였다. 즉, 1982년 1월 1일부터 1986년까지 5년간 신청을 받아 1952년 평화조약 발효에 즈음한 일본국적 상실자 및 그의 후손에게 모두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재일교포 일부는 이와같은 특례영주도 신청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법126호를 고수하였다.

사실상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법적지위 협정이 보완을 필요로 했던 점은 협정영주 3세 이하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법적지위 협정에서는 이들 3세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협정발효 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시한이 1991년 1월 16일이었으므로 이른바 '91년문제'<sup>14)</sup>라고 불리었다.

## ② 원인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라는 의미에서의 한일회담 평가는 차치하고, 한국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지위협정의 결과는 이상과 같이 유명무실한 졸속외교였다는 평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쿠데타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한일회담을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다.<sup>15)</sup>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박정희가 한일회담에 조금해했던 흔적은 도처에 나타난다. 그 조금성은 당시 만연되어 있던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에서도 비롯되었지만, 그보다는 쿠데타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업적이 필요했고 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끌어 들여야 할 필요성에 더욱 기인하고 있었다. 그러한 조금성의 표시는 한일간의 협상에 있어 한국측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고 반면에 일본측의 협상지위는 올라감으로써 한국은 저자세 외교를 면할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배상은커녕 민법상의 채권관계를

14) 한·일 양국은 1988년부터 약 2년여의 협상 끝에 이른바 1991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91년 합의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었으나, 일본 정부는 합의내용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으며 법률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출입국관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였다. 1991년 4월 26일 일본 국회는 출입국 관리 특례법을 통과시킴으로서 그동안 복잡하게 구분되던 구 식민지 출신 재일한인 및 재일 대만인의 법적 지위를 일원화시켰다. 즉, 종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다가 평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일본 국적을 상실한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들의 일본출생 자손으로 이법 시행시에도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일률적으로 特別永住權이 부여되었다. 그 대상자는 기존의 협정영주권자, 법126호자, 특례영주자를 중심으로 약 65만명에 육박하였다. 한편 퇴거강제의 사유는 일반외국인에 비해 매우 제한된 것이었지만, 법적지위협정에 대해 그 지위가 새로이 강화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합의각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재일교포 사회도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가 특별영주자로 일원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증 휴대 의무제도의 개선과 취업상의 제한 폐지, 지방선거 참정권 획득, 무연금자 문제의 해결 등이 미결의 상태로 남았으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재일교포 사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15) 정해구, 한일회담과 박정희, 『근현대사 강좌 (95년 통권 제 6호)』 p. 193

의미하는 청구권의 개념마저 ‘경제협력’이란 용어로 회색시켰다. 즉, 그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6)</sup> 재일 한국인 사회의 형성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재일 한국인에 대한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의 ‘65년 법적지위협상’은 사실상 인정되고 있던 동포들의 사회적 위치를 단순히 명문화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이며, 이렇게 한국 정부의 재일동포정책 제 1호라고 할 수 있는 법적지위협정은 재일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로 인해 불만스러운 협정이 되고 만다.

#### 4) 한일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은 한일회담이 상당히 진전되고 한·일간의 국교정상화가 거의 확실해지자 많은 동포들의 韓國籍 취득을 예상하고 서둘러 國籍法을 제정하였다. 1963년 10월 9일에 제정된 북한 국적법은 제 1조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북한의 공민임을 규정함으로써 전 재일교포들의 국적이 북한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 4조 1항에서 북한 공민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는 북한 국적을 취득한다는 속인주의원칙을 표방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일교포들이 북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국적법은 재일교포들을 자국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통치를 정당화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북한은 1965년 2월 25일 한일 기본조약 가조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조약은 ‘한일 양국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행위로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남한 재침략의 문을 열어 조선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sup>17)</sup> 1965년 한일조약이 조인되자 북한은 그 다음날 성명을 발표하여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과 모든 협정은 미국의 군사동맹 조작을 위한 음모책의 일환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조국의 분열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조약과 제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협정은 재일교포에게 한국적격을 강요하여 조총련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sup>18)</sup>

16) 정해구 같은 글 p. 194.

17) 백경국, 조총련의 노선과 활동, 『교포 정책 자료(제 37집)』 p. 70.

18) 유삼열,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과 조총련(서강대, 1990) pp. 100-106.

## 2. 조총련 산하 동포 모국방문·성묘단 사업<sup>19)</sup>

### 1) 모국방문 사업의 배경

조총련 산하 동포 모국방문 성묘단 사업 시작 경위는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北赤측에 제의한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근거한다. 1973년 7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 7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 대한 적십자 측은 동년 9월에 추석 성묘단을 상호 교환방문토록 할 것을 제의하고, 74년 11월에는 60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생사 여부 및 주소 확인을 그리고 75년에는 면회 또는 부모·친족의 사진·서신 교환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의는 북한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民團은 1975년 초부터 이산가족 찾기의 가능한 범위로서 재일동포 사회만을 대상으로 ‘조총련 산하 동포 성묘단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동년 4월 14일에는 16명이, 그리고 15일에는 32명이 시범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동년 5월부터는 ‘과거의 행적을 불문하고 참가 및 귀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사업을 본격화 하였다.

### 2) 성묘단 사업의 확산 및 참가자의 반응

民團을 주축으로 한 전국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75년 9월 11일 천여명에 달하는 제 1차 추석 성묘단 실시를 출발로하여 제 2차에 350명 등, 참가자의 안전귀환이 확인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 공식으로 성묘단 사업이 시작된 후 만 1년 사이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다.<표 1>

후에 밝혀진 사실로, 성묘단 참가자 중에는 살아서 歸日하지 못할 것을 각오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그들의 심정은 다음과 같은 한 참가자의 기록으로 엿볼 수 있다. ‘우리들 중에는 조국방문 출발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장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혼까지 끝낸 사람, 유언을 써놓고 온 사람, 재산을 정리하거나 나누어 준 사람도 있었다. ... 도착이 가까워 오면서 ... 반체제하에 들어왔다는 실감에서 크게 후회하고 ... 한탄하였던 것이다.’<sup>20)</sup>

### 3) 성묘단 사업의 성과와 평가

성묘단 사업은 民團의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참가자의 개인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19) 민단 50년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998) pp. 301-307.

20) 民研 1號(1979, 1, 25) 앞의 책에서 재인용.

평가된다. 우선 참가자 개인으로서 폐쇄적인 조총련 체제 속에서 왜곡된 모국관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 1의 성과로 들 수 있고, 둘째로 참가자들이 본국을 직접 겪음으로서 이후에 조총련 조직 전반에 걸쳐 동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참가자들의 民團 轉向으로 민단의 團勢는 대대적으로 확장되는데, 초기 2만여 명의 참가자 중 약 70%가 민단에 입단하게 될 정도로 성묘단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성묘단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인도주의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시 북한 정권 및 조총련의 관계 하에서 성묘단 사업의 의의를 찾는 평가 역시 중요하다. 즉 6·70년대의 북송사업을 통해 조총련의 조직강화를 피하고 재일동포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던 북한에 대하여 모국방문 사업은 남한 정부의 의미있는 견제책이 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북송사업과 비교해 볼 때, 북송이 영구 귀국이었던 데 반해 모국방문은 말 그대로 방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수에 있어서도 북송자 수에 비해서 모국방문 참가자의 수가 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 사업을 등가성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남북한 정권이 각각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세싸움’이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상호 경쟁적 재일동포정책이라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V.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

### 1. 북송사업

#### 1) 북송사업의 배경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이 양국의 이견 조정에 실패하고, 제 4차회담 역시 양국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이 추진되었다.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좌익계 재일동포들의 존재는 종전 이후 일본 공산당과 제휴하여 일본 정부와 점령당국에 대한 함으로써 대내외의 공산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전후 일본 내외의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층민이었던 조선인에 대한 공공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도와 결합하여 일본의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북송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 즉, 일본 정부는 북송을 통해 한국을 견제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북한에 북송하는 것이 자국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고위책임자가 북송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959년 1월 29일이다. 이 날은 조총련 북송대책위원회가 ‘이미 북송 희망자가 11만 7천명에 달하였으며 북송 절차가 구체화되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날로 일본 외상은 일본의회에서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일 조선인 중 북송희망자에 대하여 출국을 허가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결국, 59년 2월 13일 일본 각의는 재일교포 북송을 일본 정책으로 결정하였으며, 일본 외무성은 재일교포의 북송 결정 이유로서 명분상의 거주지 선택 자유와 인도주의 원칙 외에도 북송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의 중지 요망을 수락할 지라도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재일 한인의 생활이 빈궁하여 북송은 인도적 문제로서 긴급한 것이고, 현재의 출입국 관리법으로는 재일동포의 북송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sup>21)</sup>

한편, 북송을 택한 재일교포의 이유를 보면, 첫째 당시 재일교포의 대다수는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일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 둘째 일본에 머무를 수 없는 피치못한 개인적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셋째 조총련 간부와 가족들의 경우처럼 ‘모범’이 되기위해 자진해서 북송을 결정했던 경우, 그리고 당시 교포들 사이에서는 ‘그 길만이 살길’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점 등등이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흔히 ‘강제 북송’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되는 이데올로기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초기 북송 교포들의 북송 열기는 대단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재일교포의 북송은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양측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그리고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 2) 북송사업의 경과

북한이 말하는 ‘귀국사업’, 즉 북송은 1959년 8월 인도의 캘커타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 회담에서 ‘재일 조선인 귀국 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성사되어 그해 12월 24일 제 1차 북송선이 975명의 재일동포를 싣고 북한을 향하게 되었다. 북송 협정은 그 후 7차의 연장 끝에 1967년 11월 12일 결국 폐기되었다. 1966년 8월 23일 일본 각의는 북송협정을 1966년 11월 12일부터 1년간 연장하며, 상기 협정은 재갱신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고 1967년 4월 20일 일본정부 차관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이것은 1966년에 들어와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21) 유삼열, 앞의 글 p. 89.

22) 진희관, 조총련 연구 「역사비평 (95년 가을 통권 제 30호)」 pp. 192-193.

23) 유삼열, 앞의 글 p. 89.



이루어졌고, 조총련의 북송을 빙자한 정치적 선전활동 및 반정부집회, 그리고 북송희망자수의 격감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총련은 대중집회와 지지서명, 각계 요로의 진정활동을 통해 북송 금지 방침을 저지하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1971년 2월 4일 북·일 적십자는 그간 비밀리에 진행되던 북송협상을 끝내면서 북송재개 합의서에 조인하게 된다.

이렇게 59년에 시작되어 일시 중단 되었다가 71년에 재개되어 84년에 막을 내릴때까지, 북송을 통해 북한으로 영구 귀국한 사람은 총 9만 3천여명에 이른다.<표 1> 사업 초기인 1959-1961년 사이에 7만 4천여명이 귀국하였으나, 그 후 해마다 줄어들어 1970년대에는 대단히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는 극미한 숫자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사회 전체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북송자가 급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일본에 있는 북송자의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인권 및 생활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 3) 북송사업의 영향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은 한국정부에 외교적 타격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민단으로 하여금 본국 정부를 불신임하게 하는 등 재일교포 사회에서 한국의 지지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반면에 북한은 북송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북한이 북송을 추진했던 이유가 전후 북한 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한일간의 이간을 피하여 북일간의 관계 개선 및 자유왕래의 길을 마련하며, 또한 북송을 통하여 전체 재일교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북한의 이러한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송을 통한 북한과 재일동포간의 혈연적 유대 형성은 북한이 조총련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재일교포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북한은 한일회담을 통해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을 통하여 일본에 확고한 북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4) 북송에 대한 한국의 반응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의 북송 방침을 표명하게 되자 한국 정부는 그러한 처사가 양국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송저지를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첫째, 재일교포의 존재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이들의 추방책의 하나로 복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인도주의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 술책이며, 둘째,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는 유엔이 승인한 한국 정부와 논의되어야 하며, 셋째, 한일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와 재일교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재일교포가 한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일본의 처사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며, 이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 적십자도 이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제네바에서 북한과 일본이 복송협정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1959년 6월 15일 다음과 같은 3개항의 결의를 하게 되는데, 첫째, 재일동포의 복송반대 운동을 최후까지 계속하고, 둘째, 일본정부에 대하여는 재일동포의 기본적 인권과 생활권 확보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셋째,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재일동포의 보호시책에 대한 10여년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있는 시책이 전무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자유민주당에 대해서 불신을 표명한다는 것이었다.<sup>24)</sup>

결국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 그리고 재일교포 추방정책과 한일회담의 전개로 인해 불안해 하던 좌익계 동포들의 이해관계가 밀착되어 추진되었던 복송을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저지할 수 없었으며,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2. 교육원조비와 민족교육

### 1) 교육 원조비 송금

1957년부터 북한이 송금하기 시작한 교육 원조비는 1995년 1월 현재 129차 422억여엔에 이른다.<sup>25)</sup> <표 1> 북한은 연 10억엔 내지 20억 엔 규모의 막대한 송금을 함으로써 조총련으로 하여금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게 하였는데, 이러한 민족교육은 당시 교육열이 매우 높았던 재일동포 사회에서 적지않은 교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에게 북한의 영향력이 깊이 파고들게 되었으며, 조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되어 재일동포의 상당수가 조총련을 중심으로 북한에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그 지원금 액수가 대단히 축소되었지만 6·70년대의 막대한 교육비 송금은 조총련이라는 조직에 애착을 갖게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사람들은 북한이 전 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재일동포 자녀의 민족

24) 민단 50년(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998) pp. 261-266.

25) 김창규,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 『교포 정책 자료(제 52집)』 p. 93.

교육에 큰 돈을 지원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녀들을 조총련계 학교에 등록시킨 이유는 정치적으로 친북이거나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해서라기 보다는 단지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원해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민단측 인사들은 이러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총련 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보조금을 주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남한 정권에서 동포의 민족 교육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북한보다 약했던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sup>26)</sup>

## 2) 민족교육

김일성은 1970년 조총련 결성 15주년 기념 축하문을 통해 ‘총련은 재일동포들 속에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쓰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광범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 재일교포 방문단에게 한 담화에서 ‘여러분은 또한 아들·딸을 사회주의 조국의 열렬한 옹호자로 키워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은 아들·딸을 다 조선학교에 보내어 조선말을 배우게하여 조선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sup>27)</sup> 이는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원조금의 목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첫째는 조선사람으로서 조선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사람으로서 북한을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총련은 결성대회 때 이미 민주민족교육 실시를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시기마다 언급하여 강조하고 있다.

1996년 현재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족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160개교이다. 이 중 민단체 학교가 11개교 뿐인데 반해 총련계 학교는 149개교에 이른다. 민단체 학교의 내역은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4개이며, 총련계 조선학교는 초급학교 80개, 중급학교 56개(초중학생 수는 11400명), 고등학교 12개(4800명), 대학교가 1개(1200명)이다.<sup>28)</sup>

이렇게 민족학교의 수에 있어서 민단체와 총련간에 큰 격차가 나는 주된 이유는 남한과 북한의 재일동포 민족교육에 대한 시각이나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57년부터 1971년까지 남북한의 교육원조 송금액을 보면 북한이 30,315,320달러, 남한이 4,734,392달러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가 현재의 기형적인 상황을 이루게 한 것이다.

한편, 남북간의 대치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총련계 조선학교를 민족교육의 터라고 생각

26) 이정훈·윤인진, 재일동포의 민족 교육과 모국 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 한인 연구(제 7호)』, p. 181.

27) 진희관, 앞의 글 pp. 190-191.

28) 이정훈·윤인진, 앞의 글 p. 178

하기 보다는 적대세력 양성기관으로 간주해, 가능하면 민족교육을 막으려는 일본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민족교육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3) 북한의 민족관과 민족교육

북한은 73년의 정치사전에서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규정 하면서, '민족을 특징짓는 표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언어의 공통성이다'라고 언급하며 민족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에 의하여서만 경제생활과 문화의 심리적 공통성이 이룩되고 또한 그것이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민족어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룡성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는 것'이다.<sup>29)</sup> 요컨대 언어의 공통성을 특히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예비하는 선결 조건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북한은 언어를 '민족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기본수단'으로 인식하여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민족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우처럼 민족개념이 국가나 당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특히 강력한 목표지향적인 실천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다짐하는 터전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민족 개념은 한마디로 '통일지향적'이다.<sup>30)</sup> 따라서, 북한의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 교육 정책 역시 재일동포의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서 조선혁명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북한의 민족교육 정책 목표가 무엇이든간에, 해방후 재일동포들의 '귀국지향성'으로 인해 그들의 교육 열기가 대단히 높았다는 점, 이 때문에 민족 교육 기관이 재일동포의 응집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런점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에 대한 인식과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교육은 時宜適切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I. 결 론

해방 후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처우는 '전후처리 방식'의 수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29) 북한의 「민족주의」 선전 자료집(국가안전 기획부, 95.12) pp. 37-53.

30) 박호성,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당대; 1997) p.115.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절차를 통해 접근하지 못했다. 먼저, 패전국 일본은 한국전쟁이나 대미관계에서의 반공적 동맹국 지위 획득을 통하여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재일한국·조선인의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방식에 대하여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내리기 보다는 국민감정을 앞세우거나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응을 해 오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응은 권력과 언론의 유도에 따른 것으로 '저널리즘적 수준'에서의 흥분과 성토가 끝나면 문제는 금새 가라앉고 망각되어 버리는 과정이 반복되게 만들었다.<sup>31)</sup> 따라서 근본적 처방이나 결론에 도달하기는커녕 시간만 흘러보내는 결과가 되고 만다. 즉, 분단이라는 상황은 남·북한 간의 경쟁적 속성을 부추겨, 재일 한국조선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본국의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임시방편적인 정책만을 늘어놓게 된다.

한국과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이 모두 경쟁적 속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남한의 정책은 주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획득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것은 조총련 조직 강화 및 민족교육 지원을 통한 '연대'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각각의 방향은 냉전이나 동북아 국제질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라는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한민족으로서의 응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이 한 발 앞섰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지위의 획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습적 차별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일동포의 역사적인 특수성이나 일본의 재일 조선인에 대한 정책의 추이를 볼 때, 당연히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의 단순한 명문화는 아무런 실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배타성이 완화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법적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향상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면, '65년 법적지위협정' 및 '91년 합의각서체제'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재일동포 정책은 동포들의 실리를 위해서도 또한 한민족 공동체의 응집을 위해서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복송사업 및 교육원조비 송금 그리고 조총련 조직 강화를 통해서 비수교 국가인 일본에 강력한 교두보를 구축했던 북한의 재일동포 정책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에 관계없이 동포사회의 결속이라는 차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한 북한사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과 애착을 보이는 보이는 동포들을 평가함에 있어, 일부의 입장처럼 북한에 있는 연고자에 의해서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세뇌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민족교육의 영향을 가장

31) 박영재, 일본의 '신제국주의': 전후사의 단절과 연속, 『근현대사 강좌 (95년 통권 제 6호)』 pp. 10-11.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송자의 인권문제나, 교육원조비의 자금조달 과정, 북한의 사회·경제적 위기 등에 대한 고려를 해 볼 때, 북한역시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21세기 다국적 민족 공동체의 역할을 염두해 볼 때, 단일 동포사회 중 최대 규모의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세계 각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한일 관계의 틀 속에 가두어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세력타툼' 속에서 재일동포에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일동포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위해서, 먼저 한일 관계를 국제관계의 일부로 파악하는 일본의 객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남·북한 어느쪽도 한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면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포사회 전체의 결속을 유인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재일동포 관련 자료

년도	인구 추이	일본인 경영자수	영업 규모 면적(정보)	자소작 배분비			비고
				자작	자소작	소작	
1900	196						
1	355						
2	236						
3	224						
4	233						
5	306						러일전쟁 종결
6	254						
7	459						
8	459						
9	790	692	11431				
1910	790	2254	86951				한일합병
1	2527	3839	126110				
2	3171	4938	130798				
3	3635	5916	184245				
4	3542	6049	197935				제1차 세계대전 발발
5	3917	6969	205537				
6	5626			20.1	40.6	36.8	
7	14502			19.6	40.2	37.4	
8	22411			19.6	39.3	37.7	토지조사 완료
9	26605			19.7	39.3	37.6	
1920	30189			19.5	37.4	39.8	산미증식계획 시작
1	38651			19.6	36.6	40.2	
2	59722			19.7	35.8	40.8	
3	80415			19.5	35.2	41.6	
4	118152			19.5	34.5	42.2	
5	129870			19.9	33.2	43.1	
6	143798			19.1	32.5	43.4	
7	165286			18.7	32.7	43.8	경제 대공황
8	238102			18.3	32.0	44.9	
9	275206			18.0	31.4	45.6	
1930	298091			17.6	31.0	46.5	
1	311247			17.0	29.6	48.4	만주사변 발발
2	390543			16.3	25.4	52.7	
3	456217						
4	537695						
5	625678						
6	690501						
7	735689						중일전쟁 발발
8	799878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9	961591						국민 징용령 실시

<표 1> 재일동포 관련 자료

년도	인구추이	한국적	조선적	귀화자	복송자	협정 영주권 취득자	북한의 교육 지원금(\$)	비 고
1940	1190444							국민총동원령
1	1469230							태평양전쟁 발발
2	1625054							
3	1882456							
4	1936843							징병제 실시
5	980635							해방, '조련' 결성
6	-							
7	598507							
8	601772							
9	597561							'조련' 해산
1950	544903	77433	467470					한국전쟁 발발
1	560700	95157	465543					'민전' 결성
2	535065	121943	413122	232				센프란시스스코 평화조약
3	556084	131427	424657	1326				
4	556239	135161	421078	2435				
5	577682	143889	433793	2434				민전해산, 조총련 결성
6	575287	146331	428956	2290				
7	601769	158991	442778	2312			615580	북한, 교육원조비 송금
8	611085	170666	440419	2246			556140	
9	619096	174151	444945	2737	2942		808430	복송시작
1960	581257	179298	401959	3763	49036		1165270	
1	567452	187112	380340	2710	22801		1141850	
2	569360	194054	375124	3222	3497		1551310	
3	573284	215582	357702	3558	2567		2197400	
4	578545	228372	350173	4632	1822		2245140	
5	583537	244421	339116	3438	2255		2243050	한일 국교 정상화
6	585278	253611	331667	3816	1860	12435	2246270	
7	591345	267261	324084	3391	1831	37812	2780600	
8	598076	289551	308525	3194		39777	2772540	
9	607315	309673	297678	1889		48647	3324790	
1970	614202	331389	282813	4646		53134	3345850	
1	622690			2874	485	81363	3321020	협정영주권 신청 마감
2	629809			4983	589	74933	30315320	
3	636346			5769	704	12142		
4	643096	285393		3973	479	7015		
5	647156			6323	379	7113		
6	651348	328725		3951	256	6641		
7	656223	345211		4261	180	6515		
8	659025	353631		5362	150	6023		
9	662561	367276		4701	126	6259		





<표 2> 모국방문 성묘단 참가 인원

연 도	참가자 수	연 도	참가자 수	연 도	참가자 수
1975	1225	1983	1527	1991	1161
6	6518	4	1549	2	1007
7	4698	5	1889	3	1225
8	5355	6	1626	4	689
9	3639	7	1684	5	662
1980	2319	8	784		
1	2221	9	1710		
2	2334	1990	1455	합계	4527 7

1999. 11

## 在韓 外國人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채택될 수 있다. 인종, 언어, 피부색, 학력, 정치적 신념 등 등. 그러나, 국제법의 시각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국적을 통한 내외국인의 구별이다. 국가가 성립하면, 소속 국민이 있고, 그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외국인이란 법적지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 사회에 독립국가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내외국인 구별의 문제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외국인은 매우 취약한 법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 외국인은 단순히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敵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외부자에 대해 환대를 하느냐 적대감을 보이느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찾기도 어려웠다. 근대에 들어 국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현대 인권개념의 발달은 외국인에 관한 법적 환경을 급격히 개선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해외교포의 존재로 인하여 그들의 현지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다. 특히, 60여만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의 개선문제는 국민감정 과도 직결되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 속의 동료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외국인 현황 및 추이>>1)

년도	외국인 인구	전체 인구	외국인의 비율
	(단위:천명)	(단위:천명)	
1965	154	28,177	1%
1975	289	34,945	1%
1985	700	40,538	2%
1990	900	42,663	2%
1965 - 1990	485%	51%	286%
1985 - 1990	29%	5%	22%

<출처: 유엔 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1994)>

1) <http://migration.ucdavis.edu/Data/pop.on.www/foreign-pop.html>에서 재인용.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공식자료인 '출입국관리통계 연보 1997년도(1998년 5월 발행)에 의하면 등록 외국인은 176,890명에 불과하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누가 외국인이나는 점이다.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국적이며, 누구를 내국인으로 규정하는냐는 각국 국내법상의 문제임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2조 1항), 이에 따라 국적법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기존의 ‘부계 혈통주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1997년 9월 19일 입법 예고되고, 이후 1998년 1월 14일부로 발효시행) 선천적 국적 취득방법(제 2조)과 혼인, 인지, 귀화 등의 후천적 국적 취득방법(제 3, 4, 5, 6, 7, 8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條 15조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 2조와 제 3조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 15조에 따라 이를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기타의 자는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최근에 글로벌화 추세와 경제위기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중인 자국출신 두뇌와 자본을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포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한국 정부도 재외동포에게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재외동포법안을 준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한국 혈통을 보유한 재외동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 기타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리의 기본법은 출입국관리법으로서, 이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국내 활동, 출국 전반을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갖고, 한국 정부의 입국허가(査證)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법 제 7조). 입국 허가시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그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결정된다(법 제 10조).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에 관련된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 20조 1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갱신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 25조). 그런데, 외국인이 입국하면 체류기간 상한까지 당연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査證 기간은 별도로 있다. 출입국 관리법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장기체류로 분류하여, 이를 居留라고 칭한다. 거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 31조 1항), 관할 사무소장은 신고자에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한다(법 제 33조). 국내에서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하며, 권한있는 공무원의 제시요구에 응해야 한다(법 제 27조 2항).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법 제 98조 2호). 특히, 17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신고시 지문을 등록해야 하며, (법 제 38조 1항) 거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제의 문제점은 국내 법제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주무장관에 대한 지나친 재량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거주관리에 있어 17세 부터 거류신고 의무, 지문등록 의무,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인간인식의 능력상 과도한 요구일 뿐 아니라, 이의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가 행정 처벌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형사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치안 유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 조차 인정치 않는 출입국관리법은, (계속) 居住者에게도 사증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출생자인 거주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의 외래자가 아니며, 그들에게는 돌아갈 별도의 고향이 없다. 내국민과 거의 동등한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며,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거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계속 거주자에게는 영주권 인정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제 전반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 4조 1항). 그러나, 건물에 관하여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권, 임차권등 토지이용권의 취득없이 어떻게 건물만을 소유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거주 외국인의 생활안정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연금법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만을 가입의 대상으로 하며(제 6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한다(법 제 13조). 의료보험법은 일단 내국민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어 국적상실의 피보험자격상실의 요건이 된다(제 10조). 다만,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면, 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법 제 8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대상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실생활면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와 규정의 미비,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기회의 봉쇄, 사회보장제 가입의 부인등으로 한국은 외국인에게는 매우 정착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추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될 것이다. 재외동포에 한정된 이중국적의 허용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반에 대해 포용하고 이들을 한민족 발전, 융성의 촉매제로 인식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족성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에 결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재외동포 특례법의 제정을 넘어 전반적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방향의 설정이 시급하다.

< 오 창 유 >

## FORUM II

## 탈북자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 땅을 벗어나서 중국이나 남한 등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이른바 ‘탈북자’ 들이 근래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90년대 이전의 경우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진 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시기의 경우가 주로 정치적 망명과 도피를 위한 것이라면 90년대 접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탈출이 탈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 문제는 외교·인권차원에서 문제 뿐만아니라 탈북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의 보호를 받고 있어 민족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sup>1)</sup> 한국의 경우 탈북자의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통일이후 북한 주민의 동화 및 적응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중요성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1.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

탈북자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탈북자의 숫자가 10만여명에서 2천~3천명까지 편차가 심할 정도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탈북자는 현재 중국정부의 북한송환 정책으로 미봉된 상태에 있지만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는 중국으로서는 정확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입장이 애매하게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에는 3만 5천여명의 탈북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기아를 피해 북한을 탈출, 자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식량난으로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이 소수있다고 말하고 국제관례에 따라 그 같은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우리는 탈북자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중국 길림성에서 98년 12월에 있었던 중국공안의 탈북자 송환에 대해 조선족 친척들의 항의가 거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한국입국 탈북자 현황

탈북자는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법률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북은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 1997년도에는 86명, 1998년 9월말까지 48명이 입국하였다. 이로써 71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북입국자의 신분이 다양화되고 가족을 동반한 집단이탈도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라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입국 탈북자의 직업은 무직이 2백34명으로 가장 많고 군인·공무원·연구원·회사원등이 2백명, 자영업 98명, 학생 59명, 직업훈련자 25명 등이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2)</sup> 이러한 탈북자의 생활조건과 적응의 문제는 입국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통일 후에도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 98년 탈북자 관련 주요일지 】

▶ 2월 27일

정부는 98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1회씩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97년 7월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 4월 3일

95년 6월 서해상으로 밀항 귀순했던 탈북자 김용화씨는 정황증거상으로는 탈북자임이 확실시 되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확인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확정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 9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탈북자를 돕기위한 전문 비정부기구가 발족했다. 이기구는 '북조선 난민 구호기금'을 명칭을 가지고 출범했으며 취지문에서 현재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숨어살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면서 이들을 돕기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 한명의 탈북자라도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영일의원이 탈북자 168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북자들의 평균 수입은 70만원이고 평균주택 규모는 20평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에서의 사회적응에 21%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18일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순한 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북한 고위직 출신 미공개 귀순자가 모두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 법제실은 18일 발간한 98년도 국정감사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귀순 뒤 몇십년이 지나도록 신원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또 현재 귀순가능성을 타진하며 중국, 러시아 등을 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가 2천~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10월 11일

북한을 탈출,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은 9월 15일 현재 모두 9백23명이며 이중 상당수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라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입국 탈북자 9백23명중 사망자와 국외이민자1백99명을 제외한 7백 24명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13일

탈북귀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내년부터 현재의 1인당 1천5백만~1천6백만에서 3천7백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 12월 13일

정부는 94년 이후 입북한 탈북자들 가운데 생계곤란자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매월 35만 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 12월 27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공안당국이 길림성에서 적발한 탈북자 1백5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소환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실질적인 난민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선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 12월 28일

중국 공산당국이 북한으로 압송한 것으로 전해진 탈북자 규모는 150명이 아니라 2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판정할 경우 북한 탈북자의 대량유입과 북중관계의 악화 등을 고려해 현재 선별적 압송을 하고 있다.

< 김 용 찬 >



자료

민 · 족 · 일 · 지  
【1998년도】

△1월 1일

- 장쩌민,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장쩌민 주석은 신년사에서 “대만은 엄연한 중국영토의 일 부분이며 조국통일은 전 인민의 염원”이라고 전제하고 “대만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아래 양안간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쿠르드 난민, 이태리 도착: 쿠르드 난민 3백 86명을 태운 ‘코메타’호가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 난민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터키 남동부의 쿠르드 본거지를 탈출했다. 이들이 이탈리아를 선택하는 이유는 허술한 입국관리와 망명허용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난민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등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국경통제를 실시했다.
- 부룬디, 후투족 반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후투족 반군들이 수도 부줌부라의 정부군 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2백50명의 민간인 등 모두 3백6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1월2일

- 말레이시아 정부, 외국인 노동자 귀국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1백만명을 귀국조치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난에 따른 실업사태에 대비,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80만에 달하는 불법 체류노동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5일

- 인도네시아, 화교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반둥시에서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1천여명의 노점상이 인도네시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화교의 점포를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1월6일

- 예멘, 부족간 갈등으로 한국인 납치: 예멘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허진 1등서기관 가족이 납치되었다. 외국인 납치사건이 예멘에서는 빈번한 일인데 그 이유는 부족간 갈등을 외국인을 포로로 삼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1월7일

- 한국, 외국인 노동자 자진출국 급증: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연말부터 부도와 원화폭락에 따라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일 1백명 정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다가 법무부가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방침이 발표되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1월14일

-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고수 방침: 중동 평화협상에서 강경노선을 견지해왔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정부는 팔레스타인과의 어떠한 최종 협상에서도 요르단 강 서안의 방대한 지역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1월18일

-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위협: 아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이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평화과정에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위협했다.

△2월2일

- 한국,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검토: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날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내에 1년이상 장기 체류하는 17세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제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12일

- 한국, 해외교민청 설치 방침: 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정부와 해외 교민의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경제교류·문화전수·2세교육 등을 담당할 현지 교민청 설치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월14일

- 대만, 1천만명 중국 방문: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8년 대만인의 중국 본토 방문이 허용된 이래 97년 10월까지 1천 1백43만명의 대만사람이 중국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2월16일

- 인도, 민족문제로 폭탄테러 발생: 인도 코임바토르시에서 이슬람교도를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특혜종식을 주장하는 힌두교 민족주의 노선 바라티야 자나타당의 지도자 랄 키리시나 아드비니가 유세를 하기전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2월28일

- 중국, 소수민족 출신 중용: 중국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제9기 전인대 대표명단'에서 내몽고자치구 출신인 부허와 티베트와 신장출신인 모바라와 거례랑 제등 소수민족 출신들이 중용되어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이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3월3일

- 서방국가, 코소보 사태 진상조사 결정: 유고연방 세르비아 경찰의 코소보주 알바니아계 주민 20여명 학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의 제의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코소보학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월5일

- 스리랑카, 타밀족 폭탄 테러: 스리랑카 콜롬보 중심부에서 타밀족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 게릴라에 의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백50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3월7일

- 세르비아, 코소보 무차별 살상: 세르비아 보안군은 코소보주 알바니아계에 대한 소탕작전을 재개, 테러범 26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세르비아군이 민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자행해 75명이 숨졌다고 반박했다.

△3월9일

- 코소보, 알바니아계 항의 시위: 세르비아가 코소보 분리주의 세력 소탕작전완료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코소보의 수도 프리스티나에서는 수만명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측의 학살에 항의, 10년만에 최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서방 6개국 세르비아 제재 방안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등 6개국 은 코소보 사태에 대한 회의를 갖고 무기금 수를 포함한 5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5 개항은 세르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주민 억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장비 인도 중단, 코소보주 유혈 사태와 관련있는 세르비아 관리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세르비아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세르비아 해외자산 동결 등이다.

△3월13일

- 중국, 조선족 조남기장군 부주석 선출: 조선 족 출신으로서는 중국내 최고위급 인물인 조 남기 장군이 통일전선조직인 제9기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에서 31명의 부주석중 한명으로 선출됨으로써 중국 영도층에 복귀했다.
- 일본, 재일동포 참정권 불허 합헌 판결: 일본 대법원은 92년 참의원선거 때 일본국적이 아 니라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절당했던 '재일 외국인 참정권 92(재일당)' 당수인 재일동포 3세 간사이대 교수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재일동포의 참정권 불허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했다.

△3월24일

- 코소보, 무력충돌: 코소보 분쟁과 관련해 미 국등 서방 6개국이 신유고연방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세르비아 경찰 과 코소보 분리주의자간에 전투가 벌어져 4 명이 사망했다.

△3월26일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불법이민자 폭동: 말 레이시아 쿠파라룸푸르 남부 40km 지점의 세 메니 불법이민자 수용소에서 인도네시아인 불법이민자들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충돌, 불 법이민자 4명과 경찰관1명이 사망했다.

△4월10일

-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체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버티 어헌 아일 랜드총리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평화협정 요지는 ① 북아일랜드의회 구성 ② 북아일랜드·아일랜드간 각료회의 구성 ③ 아일랜드·영국간 회의기구 구성 ④ 헌법개정 ⑤ 무장해제 등이다.

△4월12일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화해 제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시사주간지 뉴 스위크와의 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웃 팔 레스타인과 화해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① 이스라엘 에 대한 테러공격을 방지할 안전보장 장치 마련 ② 이스라엘의 파괴를 촉구하는 팔레스 타인해방기구(PLO)현장의 삭제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27일

- 코소보, 국경지역 병력추가 배치: 코소보 자 치주 서부 알바니아 접경지역에 병력을 추가 파견, 경계를 강화했으며 알바니아도 국경지 역 보안조치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4월29일

- 중국과 대만, 회담 개최: 중국과 대만은 제2 차 해협회-해기회 실무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4월30일

- 북아일랜드, IRA 무장투쟁 방침 지속 천명: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은 북아일랜드 평화협 정에 규정된 IRA의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A사령부는 이날 정 치조직인 신페인당의 기관지에 발표한 성명 에서 "IRA의 무장해제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5월10일

● 북아일랜드, 신페인당 평화협정 공식비준: 무장단체 아일랜드공화군(IRA)의 정치기구인 북아일랜드 구교계의 신페인당은 당 대회에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신페인당은 이날 1천여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95%의 압도적 지지로 평화협정을 승인하고 평화협정안에 대한 찬, 반 국민투표에서도 찬성키로 결의했다.

△5월22일

●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국민투표 통과: 북아일랜드 평화안이 북아일랜드 신·구교계 주민들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71.1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6월4일

● 카슈미르 이슬람교분리주의자들 총파업: 핵실험 강행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최대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이슬람교 분리주의자들이 총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카슈미르 전역이 마비됐다.

△6월24일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서 점진적 철수 방침: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벨로 주교는 이날 하비비 대통령과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2시간여의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점진적인 철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25일

●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지지파 권력장악: 북아일랜드 총선에서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신, 구교계 정당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6월28일

● 동티모르 분리독립 소요사태 발생: 인도네시

아의 동티모르에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수천명의 시위대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 시내로 몰려 나와 소총·최루탄으로 무장한 군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 분리독립 국민투표’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7월2일

● 서방 각국, 유대인 보상사업 합의: 미국, 러시아 등 세계 39개국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약탈당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술품을 찾아내고 학살된 유대인 후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7월3일

●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주 독립요구 시위: 학생들은 이리안 자야주의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진압하던 보안군의 발포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영 인타라 통신이 전했다. 이리안 자야주는 63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으며 인구 대부분이 멜리네시아인으로 기독교도가 많다.

● 미국, 유대인 보상 걸림돌 스위스 은행 제재 결정: 미국의 3개주는 유대인 희생자 배상문제 제로 스위스 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의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시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스위스 은행들간의 배상 협상이 결렬된 뒤 이들 은행들의 미국내 투자활동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이같은 항의 조치가 스위스 제품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7월9일

● 나토, 코소보사태 무력개입 준비: 나토는 신유고연방 코소보주 민족분쟁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무력개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나이지리아, 부족간 무력충돌: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17명이 사망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남서부 출신인 요루바족과 북부 출신으로 군과 군사정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우스스족 사이에서 벌어진 유혈충돌이다.

△7월15일

- 미국, 히스패닉계 급증: 미국 인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내 히스패닉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경 중남미계가 흑인을 앞질러 미국 제 1의 소수민족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50년에는 다른 소수 민족의 합보다 중남미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7월18일

- 달라이 라마, 중국당국과의 화해 모색: 인도 달라살라에 근거를 둔 티벳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티베트도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장쩌민 주석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7월29일

- 세르비아, 알바니아계 공격: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세르비아 병력이 알바니아계 반군의 거점 말리세보를 장악했다.

△8월1일

-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 무력충돌: 인도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사흘간 포격전이 발생해 사상자가 100여명에 달한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했다.

△8월3일

- 콩고, 내전 발발: 콩고 공화국 투치족 주둔군이 로랑 카빌라 대통령 타도를 선포하면서

투치족과 카빌라 충성과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발생했다.

△8월5일

-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어 사용 강조: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은 앞으로 외국 인사들과 대화할 때, 영어 대신 필리핀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대학 등에서도 필리핀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8월6일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제한적 자치 검토: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외무장관은 “동티모르에 제한적인 자치를 부여하는 협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8월22일

- 아일랜드 민족해방군 휴전선포: 아일랜드 민족해방군은 ‘완전휴전’을 선포하고 그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민족 해방군은 이날 벨파스트 지부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의 재통일을 위한 전쟁을 22일 정오부터 휴전한다고 선언했다.

△8월24일

- 중국, 달라이라마와 회담 추진: 중국 지도부는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티베트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망명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3일

- 중국, 한국 재외동포 특례법 불만 표시: 정부 당국자는 3일 “중국은 1백 92만명의 조선족에게 각종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이 특례 법안이 여타 55개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주한 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계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9만), 우즈베키스

탄(22만), 카자흐스탄(11만)도 특례법이 추진 될 경우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9월16일

- 미국, 60년대부터 달라이라마 지원: 미 중앙정보국은 지난 60년대 중반 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에게 연간 18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 해외 망명한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에게 해마다 17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최근 기밀 해제된 국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9월17일

-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 휴전 선언: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 단체인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가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다. 바스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위해 지난 30여년간 투쟁해 온 ETA는 이날 에우스카디 인포르마시온에 보낸 성명서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무장 활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일본, 교토대 재일동포 학생 입학 허가: 일본 교토대가 이 학교 대학원 입시시험을 치른 조총련계 조선대학교 졸업생 정진홍(23)에게 최근 합격통보를 보냈다.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재일동포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 사실을 재일동포 사회는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를 향한 주요 조치로 환영했다. 그러나 문부성은 여전히 "외국인 학교 출신자들에게 대학과 대학원 수험·입학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9월25일

- 북한, 일본 반조총련 사건 비난: 북한은 일본에서 벌어진 일련의 반조총련 시위를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정치 탄압' 이라고 비난하고 일본 당국에 대해 행위 당사자의 처벌과 재

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조총련계 '만경봉 상사'의 수출 위반에 대한 일본 경찰의 조사(21일) 및 일본 우익 단체들에 의한 조총련 중앙회관 앞 시위사건(22일) 등을 거론하며, "이것은 반공화국 압살책동이며 조총련의 애국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탄압" 이라고 비난했다.

△9월30일

- 타밀반군, 정부군 시체 인도: 스리랑카에서 타밀반군은 정부군 시체 6백구를 적십자에 인도했다. 정부군의 사망자는 반군측이 확인한 숫자가 862명으로 96년 이래 최대이다.

△10월2일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광범위한 자치 허용 제의: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인 알리 알리타스는 동티모르에 독립대신 광범위한 자치를 제의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투표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티모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월4일

- 호주총선, 백호주의 정당 참패: 3일의 호주총선에서 존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국민당의 집권연정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반아시아와 반이민을 주장하면서 인종적 백호주의를 강조한 일국당은 연정과 야당들의 집중적 견제로 인해서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10월8일

- 코소보, 알바니아계 휴전선언: 코소보주 알바니아계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다. 알바니아계 반군조직인 코소보해방군(KLA)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방위할 권리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휴전을 감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10월11일

- 러시아, 세르비아 공습 반대: 러시아국방부는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습할 때는 유고와 군사적 협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은 나토의 군사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폭격기를 영국으로 파견하였다.

△10월14일

- 신유고연방, 코소보 자치 허용: 밀로세비치 대통령은 홀브룩 미 코소보특사와의 회담에서 자치를 약속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감시단 파견,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안전보장 등을 합의했다.

△10월18일

-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해결 노력 합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외무장관들은 3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분쟁 위험을 줄이고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0월19일

- 중국 대만간 견해차 노정: 14일부터 열렸던 중국·대만 양안회담은 우호적이었지만, 중국의 3불정책과 대만의 3통정책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10월23일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타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중동평화협상 타결되어 와이밀스 협정이 조인되었다. 양국 정상들은 '요르단강 서안 영토와 평화 교환'에 합의하고 클린턴 미대통령과 함께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13%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추가이양하며 양측이 포괄적 안보조치를 수행키로 합의했다.

△11월4일

- 달라이라마, 독립요구 포기 화해 추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미국을 공식방문했다. 그는 독립요구에 대한 포기의사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월10일

- 터키, 쿠르드 반군 소탕 작전 개시: 쿠르드 반군소탕을 위해 터키군 2만이 이라크북부에 침공했다. 이들은 쿠르드노동당 게릴라를 수색하기 위해 침공했다.

△11월20일

- 이스라엘, 협정 이행: 이스라엘은 와이밀스 협정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군을 시작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죄수 250명을 석방하였다.

△12월2일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계획 철회 촉구: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철군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여파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였다.

△12월13일

- 미국, 평화협정 이행 촉구: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방문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와이밀스 평화협정 이행을 촉구했다.

△12월14일

-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헌장 삭제: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는 반이스라엘 헌장 삭제를 압도적으로 결정했다.
- 신강위구르, 망명정부 수립: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반체제 인사들은 터키의 앙카라에서 민족대회를 열고 사실상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12월15일

-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상회담 서안 철군 문제로 결렬: 중동평화협정의 원만한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미·이·팔 3자 정상회담은 이스라엘측의 요르단강 서안 철군문제 등에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렬됐다.

△12월24일

-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계 공격 재개: 신유고연방의 세르비아군이 나토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소보자치주내의 알바니아계 거점을 공격했다.

△12월25일

- 러시아 벨로루시 통합선언: 러시아의 옐친대통령과 벨로루시의 루카센코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99년에 양국을 통합한다고 선언하였다. 통합될 국가는 외교와 국방, 치안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단일통화 및 관세지역 등을 도입하여 경제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를 상반기중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며 벨로루시가 한 주로 귀속될 전망이다.

△12월27일

- 네타냐후 평화협정 준수 의지 천명: 네타냐후 이스라엘총리는 내각불신임으로 인한 조기총선을 치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이행용의를 밝혔다.

△12월28일

- 옐친, CIS 내부 통합 촉구: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CIS 내부의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의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CIS 가맹국간의 분쟁을 방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2월29일

- 나토, 코소보 사태 개입 의지 재확인: 나토 코소보에서 '취약한' 평화가 위협받을 경우 개입할 준비가 돼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는 10월 중 내려진 공습개시를 위한 전시편성명령이 유효함을 지적하고 언제라도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